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2. 상 업

Ⅲ. 수공업과 상업

1. 수공업

1) 관청 수공업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고려시대 관청수공업은 중앙 관청수공업과 지방 관청수공업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앙 관청수공업은 開京의 중앙관청에서 조직·운영하던 수공업장으로 창·칼·갑옷 등의 군수품 및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품, 사치품을 생산하였다. 지방 관청수공업은 금기방·잡직방·갑방 등과 같이 중앙관청에 제공할 공물을 위한 것과 지방관청 자체의 수요를 위한 것 등 두 종류의 물품을 생산하였다. 고려시대 관청수공업의 행정적인 관리 운영체계 상에서 최고의 담당기관은 공조였다. 공조의 기능은 산택의 관리와 수공업자인 工匠들을 통제하며 토목건축과 관련된 營繕을 맡아 보는 것이었다.

〈표 1〉의 14개 수공업관청 가운데 장복서·봉거서·공조서·내부시·도교 서·잡직서 등은 주로 궁정 수공업품을 담당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부수요를 위 한 일반관청 수공업품을 담당하였다. 각 수공업관청들의 직능은 아래와 같다.

선공시는 일명 장작감이라고도 하며, 정부의 건축 및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다. 군기시는 일명 군기감이라고도 하며, 주로 무기를 제조하는 기관이며, 내 궁전고 역시 무기생산을 담당한 기관인 듯하다. 장복서는 왕족의 의복류를 제조·조달하는 기관으로 상의국이라고도 하였다. 내부시도 각종 직물과 의류를 마련한 관청이다. 공조서는 중상서라고도 하며 귀족들에게 수요되는 각종 장식품을 제조하는 기관이었다. 도교서는 그것이 폐쇄되었을 때 雜作局이 설치

420 Ⅲ. 수공업과 상업

⟨표 1⟩

Į.	·청명		I .	掌服署(尚衣		l	都校署	都染署	雜織署	掖庭局	奉車署 (尚乘	l		
	. 0 0	監)	監)	局)	署)						局)	1313	房	寺)
	정 3													판사 1
	종 3	판사 1	판사 1											경 1
	정 4	감 1	감 1											
	종 4	소감 1												소경 2
관	정 5													
직	종 5		소감 1											
및	정 6			봉어 1	영 1					내악자 1	봉어 1			
	종 6	승 2												승 1
능	정 7	주부 2				영 2						판 관 2	판 관 2	
급	종 7		승 2	직장 1						내시백 1	직장 2			주부 2
	정 8		주부 4		승 2	승 2		영 1	영 2					
	종 8						영 2			내말자 감 1				
	정 9						승 4	승 2	승 2					
	종 9													
				서령사					1 '	감작 1				서사 4
	11			4				기관 2	기관 2	l		2		기관 1
아 전		산사 2	산사 4	기관 2 주의 1		산사 1	4 기관 2			3 기관 3 급사 3	승 지 50	기 관 2		

* 비고:《高麗史》권 77, 百官 2.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궁중과 궁부에서 각종 잡세공품을 제조하는 기관이었다. 도염서는 각종 염료를 제조하고 염색작업을 담당하던 기관으로서 어떤 때는 잡직서와 병합하여 織染局이 되기도 했다. 잡직서는 각종 직

물의 제조를 담당한 기관이었다. 액정국은 국초에는 액정원으로 불리웠고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고 왕이 사용하는 문방구와 열쇠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궁중용 견직물 등을 관장했다. 봉거서는 왕실용의 車類를 관장하던 기관으로서 상승국이라고도 했다. 태악관현방은 국가의 음악을 취급하는 관청이었고, 태복시는 국왕이 타는 가마와 말을 관리하는 관청이었다.

《표 1》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먼저 수공업관청들의 등급은 단순히 생산의 규모나 중요성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층에 수요되는 제품을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규정되어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수공업관청들의 비중에 따라 최고 정3품의 판사로부터 시작하여 최하 정9품의 승을 통해 행정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수공업관청들에 대한 행정 관리체계는 신분적 위계질서가 철저히 내재되어 있었다. 즉 판사・감・경・소감・소경・영・승・주부 등이 배치되어 행정적으로 지휘하는체계가 세워져 있었으며 실무적인 일은 아전출신의 감작・감사・사・서령사・서사・기관・산사・계사 등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였다.

관청수공업에는 행정 관리체계와 함께 생산 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었다. 관청수공업은 민간수공업에서 해결하기 힘든 수공업제품들을 조달받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종별로 우수한 수공업자를 선발하여기술자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선발된 자들 간에도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고국가는 그들을 차등을 두어 관리하였다. 《高麗史》食貨志 工匠別賜條에 의하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상층 수공업자에게는 다른 일반 공장들을 기술적으로 지도·통제하는 임무가 부과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지유·행수·교위 등의 직위를 받았다. 이렇게 상층 수공업자들에게 직위를 준 것은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일반 수공업자들에 대한 그들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직위는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일반 수공업자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기 위한하나의 수단에 불과 했다.

고려시대 지방 관청수공업으로는 각 도에서 운영하던 금기방·잡직방·갑 방 등이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전속되어 있었다. 금기방·잡직 방·감방의 생산조직은 지방관청의 수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관청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가 중앙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한편 지방관청 자체의 수요를 위한 수공업장도 있었으나, 그 수나 규모면에서 미미하였다. 이렇게 지방관청 자체의 수요를 위한 수공업장이 중앙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지방관청들이 그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백성들에게 조·용·조를 내게 하거나 강제로 징수하여 해결할 수있었다는 데 있었다. 둘째, 각 지방에 수공업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수공업소들이 도처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일부를 징수하며 수요에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공해전에는 공수전·지전·장처전 등이 있었는데 그 수입으로서 관청의 사무용품과 관리들의 임시비용,하급 아전들의 급료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관청 자체의 수요를 위한 수공업장을 조직·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의 중앙집권력이 전국의 여러 군현에까지 침투되 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관청수공업장에 포괄되어 있던 각종 업종들은 관청수공업에서의 분업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시기 관청수공업의 업종들은 당시 생산된 제품들과 관청수공업장들에 배치되었던 장인들의 업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관청수공업에서 진행되고 있던 분업 관계는 《高麗史》食貨志 祿俸條에 있는 공장별사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각 관청에 속해 있던 공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3개 수공업관청에서 조직·운영하던 수공 업장은 68개의 작업장에 62개의 업종이 포괄되어 있었다. 그리고 68개 작업장 에는 97명의 상층 수공업자들이 소속되어 각기 해당 생산을 기술적으로 지 도·통제하고 있었으며, 그들 밑에는 일정한 인원의 일반 수공업자들이 있었 다. 군기감은 본래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것으로 여기에는 13개 업종에 23명의 상층 수공업자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13개의 업종 가운데서 노 통장·전두장·기화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종에는 2명씩의 상층 수공업자

〈丑 2〉

소속명	수공업자	소속명	수공업자
선공시			주렴장(1) - 행수
(장작감)	석공·목공·토공(?)		축저장(1) — 행수교위
군기시	피갑장(2)-지유, 행수지유부승지		어개장(1) — 교위
(군기감)	모장(2)-지유, 행수선절교위		 황단장(1) — 교위
	화장(2)-지유, 행수교위		소장(1) — 행수교위
	백갑장(2) — 행수부위, 행수부장		마장(1) — 행수교위
	장도장(2) — 행수배융부위, 행수부장	장야서	은장(3)-지유전전, 행수교위(2)
	각궁장(2) — 배융교위(2)		화장(3)-지유내전전,
	칠장(2)-좌행수교위, 부행수교위		행수교위(2)
	연장(2)-좌행수, 우행수		백동장(1) - 행수부위
	노통장(1) — 부장		적동장(1)-부위
	기화업(1) — 행수교위		경장(1) — 행수교위
	전장(2)-좌행수교위, 우행수교위		피대장(2) — 행수교위(2)
	전투장(1) - 행수부위		금박장(2) — 행수교위, 행수대장
	피장(2)-지유교위, 행수대장	F 7 1	생철장(2) - 좌ㆍ우행수대장
	수장(1)-지유	도교서	목업(2)-지유, 행수교위
장복서	, , , , , , , , , , , , , , , , , , , ,		석업(1)-지유
(상의국)	복두장(4) — 전직동정, 지유승지 행수교위, 행수부위		석장(1) — 행수
	*** (靴匠)(1) — 행수교위		조각장(1) - 지유전전
	화장(花匠)(1)ー교위		장복장(1) - 행수교위
	대장(2)-지유승지, 행수교위		나장(1) - 행수
	비혜장(1)-교위	도염서 잡직서	염료장, 염색장(?)
	홀대장(1) - 프 대장(1)	합식시	계장(3) — 지유승지동 행수교위(2)
공조서	화업(1)-지유		영구파위(2) 수장(1) — 행수교위
(중상서)	와됩(1)=시ㅠ 소목장(2)=지유승지, 행수교위	액정국	금장(2)-지유승지, 행수대장
	오흑성(2)=시ㅠ증시, 앵쿠파키 위장(1)=지유승지		라장(1) — 행수교위
	후정장(1) — 해수교위		 능장(1) - 행수부정
	주홍장(1) — 앵구파쉬 주홍장(1) — 지유부위	봉거서	대첨장(1) - 행수교위
	나전장(1)	(상승국)	
	조각장(2) — 지유전전, 행수교위		 안욕장(1) — 행수교위
	조걱정(2)-시뉴진진, 앵구교위 칠장(2)-좌·우행수교위		안교장(1) — 행수부위
	화장(1)-교위		마장(1) — 행수교위
	지장(1) - 행수부위		지마장(2)-교위, 부위
1		l	, , ,

태복시	대첨장(1) - 행수교위		전장(1) — 행수교위
(사복시)	안욕장(1) — 행수교위		전두장(1) – 행수교위
	피장(1) — 행수		궁대장(1) - 행수교위
내궁전고	각궁장(1) - 행수교위	태악관현 방	

^{*} 비고:《高麗史》권 80, 食貨 3, 工匠別賜.

들이 지유·행수·대장·부장이라는 명목으로 속해 있었고, 아마도 그들의 밑에는 몇 명씩의 일반 수공업자들이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문에는 다른 부문과는 달리 거의 모든 업종에 2명의 상층 수 공업자들이 배속된 것으로 보아 가장 많은 공장들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생 각된다. 이는 무기들을 질적으로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공장들을 한가지 제품 생산에 전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런 조건 아래서 각 업종별로 작업장 내부 분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갑옷 생산에서 피장과 피갑장 및 백갑장은 서로 분업을 행하고 있었다. 피장은 가죽을 이기고 피갑장이나 백갑장들은 그것으로 갑옷을 완성하였다. 또한 장도장과 연장 및 화장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업이 이루어졌다. 즉 장도장이 장도를 단조하면 그것을 연장들이 담금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화장들이 잔새귀질을 하여 장도자루에 장식함으로써 작업을 완성하였다.

중상서에서도 역시 분업이 존재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왕정에서 쓰일 여러가지 일용품과 사치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포괄하고 있었다. 《高麗史》 식화지 공장별사조에 의하면, 중상서에는 16개 업종에 지유·지유승지·교위·행수교위·지유부위·지유전전 등 18명이 배속되어 기술적 지도를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군기감에서는 생산기술의 지도와 통제를 맡은 상층 수공업자들이 거의 모든 업종에 2명씩 배치되어 있었던 데 반해 중상서에는 소 목장들의 목공예부문과 조각장들의 조각부문 및 칠장들의 칠공예부문을 제외 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 1명씩의 상층 수공업자들이 배속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상서에서는 각각의 업종의 생산규모가 군기감보다 훨씬 영세하였음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업종들은 16개나 되었는데, 이것은 중상서가 관청수공업장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품들을 생산 공급할 임무를 띤 수공업장이었음을 의미한다. 장야서·도교서·잡직

서·상승국 등도 수공업장의 생산규모는 영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작업은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각각의 업종들의 생산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업종들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은, 관청수공업장들에서 작업장 내부 분업은 비교적 발전하였으나 생산공정별 분업은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1)

관청수공업에서 업종별 작업장 내부 분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공정 간의 분업은 극히 미약하였다. 민간수공업에서는 물론 관청수공업에서도 한 사람의 수공업자가 혼자서 제품의 첫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과정으로 생산이 진행되었다.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고려시대 관청수공업의 인적 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양인 및 노비 신분의 수공업자들과 所 출신의 수공업자들이었다. 이 시기 관청수 공업자들 가운데서, 지방에 존재하였던 양인 출신의 수공업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 출신의 수공업자들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수공업을 위주로 하는 수공업소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이 관청수공업장에 징발되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한편 노비신분의 수공업자들에 대해서 살펴 보면, 노비신분 수공업자들 가운데는 원래의 노비들과 함께, 전쟁포로로서 노비가 된 수공업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고려의 통치자들이 신라의 반항세력이나 후백제와의 전쟁과정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노비로 만들어 관청수공업의 수공업자로 만들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통합전쟁과정에서 지방세력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신분 수공업자들이 고려의 관청수공업자들의 대열을 보충하게 되었다. 고려는 이 밖에 대외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도 관청수공업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내외 전쟁에서 획득한 포로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관청수공업장의 구성원이 되었다. 또한 비록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부, 1978; 지양사, 1989), 115

^{2)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0년 9월.

^{3) 《}高麗圖經》 권 19, 工技.

수는 적지만 외국사람으로서 고려에 귀화한 수공업자들도 있었다.4)

아무튼 당시에 가장 기술이 뛰어난 工匠은 양인이든 노비 출신이든 所 출신이든 간에 상관없이 대부분 관청수공업장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국가는 수공업자들을 장악하기 위하여「工匠案」을 만들어 그들을 등록시키고, 또 그들이 양반층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봉쇄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즉《高麗史》선거지 한직조에 의하면 "南班 및 流外 人吏와 장교 등의 아들로 공장안에 付籍하지 않은 자는 조상 중에 흠이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入仕케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工匠과 商人들은 기술을 취급하므로…그 직업에 전념하고 선비와 같이 入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려시대에는 수공업자들의 명부인 공장안 제도가 있었다는 것과 수공업자들이 벼슬하는 것을 엄격히 봉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노비들은 《高麗史》 백관지에, "都官은 노비들의 명부와 노비소송을 판결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도관에서 관장한 듯하다. 고려는 수공업자들을 공장안과 도관에 등록한 후 그들 중·상층 수공업자를 각 수공업장에 전속 시켜 복무케 하였다. 대부분의 일반 수공업자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정발하여 복무케 하였다.

상층 수공업자들과 일부 일반수공업자들의 경우 그들이 관청수공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조권을 부여받는 한편 공장별사를 지급받았다. 문종 21년(1067)에 제정된 전시과에 의하면 대장ㆍ부장ㆍ잡장인 등에게는 무산계를 받은 경우에 17결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주어져있었다. 여기서 대장ㆍ부장들은 수공업자들의 상층이었으며 잡장인들은 일반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에게 17결의 수조권을 준 것은 그들이 관청수공업장에 장기적으로 전속된 공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관청수공업장에서 장기 복무하는 장공인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전속된 공장들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씩 교대하여 복무하는 존재였다면 부단히 교체되는 그들에게 수조권을 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高麗史》식화지 공장별사조에 의하면, 관청수공업자들의 상층에게는 그들이 1년에 30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공장별사를 주었다. 별사의

^{4)《}高麗史》 권 83, 志 37, 兵 3, 州縣郡 東界.

액수는 작업의 중요성에 따라 벼는 최고 20섬으로부터 최하 6섬까지, 쌀은 최고 15섬부터 최하 7섬까지였다. 이 공장별사는 관청수공업자들의 생활자료를 보장하여 그들의 재생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장별사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 생활자료를 해결하는 몫 대신 지불하는 공장들의 녹봉 또는 料米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高麗史》 식화지 공장별사조에, "고려의 녹봉제는 문종 때에 이르러 정비되었는데 중앙의 妃主・宗室・百官들과 함께 지방의 동경・서경・남경 등과 주・부・군・현의 관원들이 모두 다 녹봉을 받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나아가서는 잡직・서리・공장들에 이르기까지 무릇 직무가 있는 자라면 그들에게도 역시 정상적으로 주는 녹봉이 있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 만큼 보장하여 주었는데 이것을 곧 별사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공장들에게도 녹봉으로 별사미를 주어 그들이 농사지어 얻을 수 있는 것 만큼의 생활 자료를 보장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高麗史》에는 공장별사를 지불하는 규정과 그 대상이 밝혀져 있는데 다음의 〈표 3〉은 각 관청의 공장들이 별사를 받은 양이다.

이에 따르면, 공장별사 대상자가 가장 많은 관청은 군기감을 비롯하여 중상서·장야서·상의국·도교서·상승국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관청들에 직종이 많고 수용하는 공장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공업 자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한 데 있었다.

군기감은 국가경비에 중요한 군수품을 생산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공장별사 대상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었다. 중상서는 국왕을 비롯한 귀족들의옷에서부터 그에 따르는 각종 일용사치품들을 생산하는 관청이었다. 이는 국왕 및 귀족들과 직접 연결된 수공업관청이었고 또 그것이 국왕의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는 물품의 생산을 담당한 관청이었기 때문에 별사 대상을 많이설정하였던 것이다. 장야서와 상의국도 그 중요성 때문에 많은 공장별사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관청수공업장의 상층 수공업자들은 수조권을 받을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별사의 명목으로 녹봉에 해당하는 보수도 받았다. 수공 업자들에게 국가가 別賜米·稻를 지급했다는 것은 공장들이 신라에서처럼 노

〈丑 3〉

	구 분				Ą	벼								
	 관청	/ 명	별사	량	20섬	15섬	10섬	8섬	7섬	6섬	15섬	12섬	10섬	7섬
1	군	기 감((군기시])			3		7	4	4	3	4	
2	중	상 서((공조시	1)		1	2	3	3	2		2	6	
3	장	0)	: /	서			2		4	5		4		
4	도	ير.	. /	서	2		1				1	3		
5	상	의	-	국			2	1		3		3	1	1
6	잡	직	,	서					3	1				
7	액	정	-	국					1	1	1		1	
8	상	승		국									6	
9	태	복	. ,	시									2	1
10	내	궁	전 :	고					1			3		
11	태	악 관	· 현 1	방	米	1料			3,		2料	8섬	9	

* 비고:《高麗史》권 80, 食貨 3, 工匠別賜.

예적 예속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임 형태의 공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5) 그러나 수조권과 공장별사를 받는 수공업자들은 상층의 수공업자와 일반 수공업자 중의 일부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공업자들이 수조권을 받으려면 직위와 직계가 있어야 했고, 공장별사를 받으려면 1년에 300일 이상을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그 해당자는 많지 않았으리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들 외의 일반 수공업자들의 경우 관청수공업장에서 작업하는 대가로 일정 정도의 반대 급부가 주어졌으리라고 짐작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자료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관청수공업장에 근무해야 했다. 즉 대부분의 수공업자들은 일정한 기간은 관청수공업장에서 일하고 또 얼마 동안은 자기 경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6)

⁵⁾ 劉元東(教聖),〈高麗時代의 手工業〉(《韓國文化史大系》Ⅱ, 고려대 민족문화연 구소, 1965), 1027쪽.

⁶⁾ 洪承基, 〈高麗時代의 工匠〉(《震檀學報》40, 1975), 66~70쪽.

이런 상황에서 관청수공업장에서의 작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도시나 농촌에서의 민간수공업의 발달은 저해되었으며,7) 점점 고려의 중앙집권력과 관청수공업의 관리 체제가 약화되는 데 따라 일부 수공업자들은 지방에 흩어져서 독립적 수공업자로 전화되어 갔다.8)

2) 소 수공업

(1) 소 수공업의 형성

고려시대의 所 手工業은 관청수공업 및 민간수공업과 함께 이 시기 수공 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민간수공업에 비하여 한층 전업적인 것이 었고 생산품의 질도 민간수공업품보다 우수했다.

手工業 所들은 신라의 成 수공업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듯하다. 《三國史記》지리지에, "方言에 이른바 鄕·部曲 등 雜所는 모두 갖추어 기록하지 않는다"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三國史記》에는 장소가 불투명한 곳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수록해 두었다. 그 중「成」이란 것이 많이나타난다. 이들「성」의 명칭 중에서 麗金成・濯錦成・寶劍成 등은 수공업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준다. 따라서「성」을「소」제도의 직접적인 모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태조가 즉위한 후 신라의 제도를 사용하면서 신라의「성」제도를 고려에 맞게 변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10

한편 수공업 소들은 신라 말기에 개별적 호족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수공 업장들이 고려에 흡수되어 편성된 것으로서, 이전에는 없던 고려만의 독특한 제도가 되었다.

삼국시기에는 적지 않은 호족들이 자체의 수공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신라 말기에 군웅할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이들의 수공업장들도 증가했을 것이다. 견훤이 신라의 수도에 침공하여 자기의 수공업장을 만들 목적으

⁷⁾ 姜萬吉. 〈手工業〉(《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3). 189쪽.

^{8)《}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職制.

^{9)《}三國史記》 권 34. 地理 1.

¹⁰⁾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韓國史論》 15, 서울大 國史學科, 1986).

로 많은 수공업자들을 납치해 간 경우에서 그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다.11)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은, 후백제와신라를 통합하는 과정이며, 지방의 호족세력들을 고려에 복속시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반항세력들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지역민들을 반역자로 낙인찍어 모두 賤役을 지게 하였다. 한편 고려에 항거하다가 역명자로 낙인찍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 고장에 그대로 결박되어 국가에 집단적으로 예속되기도 했다. 충청도 목천지방의 주민들이 왕건에게 항거한 이유로 짐승 이름의 성을 쓰게끔 강요당한 데서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12) 이러한 경우에 그 지역민들은 향・부곡민으로 전략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지방세력들이 소유하고 있던 수공업장은 수공업 소로 되었다고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수공업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수공업 소들과 그렇지 않은 소들도 많았다. 즉 사료에 나타나는 각종 소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의 성격이 짙은 歸化所나 於谷所, 바다나 강에 제사지내는 熊津溟所・德津溟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사료에 나타나는 모든 소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면, 고려사회만의 독특한 산물인 소제도의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와 고려사회만의 제도인 소를 구분해야 되는데, 《新增東國興地勝覽》에서 제시된, "각 所의 물품을 바친다"는 것과 예종 3年(1108)의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주・현과 같이 소만의 "別貢・常貢을 내는 곳"을 소의 기본성격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즉 소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공업품과 원료를만들어 내는 생산단위인 것이다.13) 수공업 소들은 고려의 성립시기에 조성되었던 사회적 조건과 수공업생산에 대한 수취정책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다.

고려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전국 군현에 金所·銀所·銅所·鐵所 등 광산물을 제런 상납하는 곳과 일용품을 생산하는 絲所·紬所·紙所·瓦所·炭所・鹽所・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 등을 설정해 놓았다. 이 가운데서도 자기소와 염소·어량소·곽소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

^{11)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0년 9월.

^{12)《}新增東國輿地勝覽》忠清道 木川縣 姓氏.

¹³⁾ 徐明禧, 〈高麗時代「鐵所」에 대한 硏究〉(《韓國史硏究》69, 1990), 6쪽.

하였으며 그 밖의 수공업 소들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소 중에서 금소·동소·은소·철소는 원료와 연료 때문에 주로 산간지대에 인접한 지역과 하천 유역에 위치하였다. 이들 소 수공업자들은 삽·망치·정·삼태기·쇠스랑·고무래 등의 도구를 마련하여 생산을 도모했다. 특히 금소의 수공업자들은 당시 사금채취가 기본으로 되어 있었기때문에 모래사장에서 간단한 함지박이나 삽·괭이 등으로 모래를 일어 사금을 채취하는 고된 노동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충렬왕 3년(1277) 국가에서 충청도의 홍주·직산 등지에서 1만여 명을 동원하여 사금을 채취한 사실로 알수 있다.(4)

이 밖에도 사치품인 명주실과 명주를 생산하던 사소·주소 등도 있었으나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다만 그것들이 대체로 수도 개경에 인접한 지역이거나 능라전이 설치되었던 서경을 비롯하여 능라, 명주 등 견직업이 발전하였던 경주·안동·성주 등지에 설치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지소는 고려시대에 종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설치되었겠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묵소는 이에 비해 언급된 사료가 종종 있다. 즉 지명에 묵장벌, 묵방리, 묵곡소, 묵장산 등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런 곳은 묵소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보인다. 자기소와 와소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 강진에는 대곡소, 대구소, 칠량소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고려시기 자기소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밖에도 전라도의 부안, 황해도의 송화와 옹진, 충청도의 대전 등지에서도 고려때 가마자리들이 발견되고 고려자기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 자기소 또는 와소들이 설치되어 자기와 기와를 생산했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충렬왕 3년 강화도에서 유리기와를 구울 때 廣州의 義安土를 원료로 가져다 썼다고15) 기록에 나오는, 의안도 자기소 또는 와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시기에는 각종의 수공업 소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고려시기 수공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4) 《}高麗史》 권 28. 世家 28. 충렬왕 3년 4월 경신.

^{15) 《}高麗史》 권 28, 世家 28, 충렬왕 3년 5월 임신.

(2) 수공업 소의 구조

수공업 소들은 대체로 그 규모가 촌락정도의 범위였을 것이다. 이것은 13세기에 충청도 가림현에 있던 금소촌을 비롯한 수많은 촌들이 각 군현과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관계로 주민들이 부역을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국가에 상소한16)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의 금소촌은 금을 채취하던 수공업소였을 것이며, 또한 금소가 촌락적 범위를 가진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예종 3년의 "경기 주현은 상공 외에 요역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괴로워하여 날로 점차 도망가고 유리걸식하니 主管 所司는 界首官에게 공역의 많고 적음을 물어 작정·시행하라"17)는 기사를 볼 때, 국가는 일반 군현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소를 지역에 맞게 설치하고 군현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소는 일반 군현과는 다른 수취구조 하에 놓여있는 특수한지역이지만 당시 고려의 지방제도가 미숙했기 때문에 군현 아래에 놓여져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에서 생산한 공물은 상공과 별공으로 국가에 제공하여야 했으며, 관청수공업장에 대해서는 원료를 생산하여 공납했을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여주목, 등신장 고적조에, "(위의 향·부곡·소·처·장에는) 모두 土姓吏와 민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 나타난「토성리」의 구체적인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료상에 나타나는 所吏層이었을 것이다.

所吏는 所民을 감독하여 공물의 생산노동을 하게 하며 동시에 그곳에서 생산된 공물을 모아 공납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 토성리의 의무를 되살려볼 때, 소리는 소 지배를 위해 외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며 본래부터 그 지역의 향리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所內에서 소리의 지위는 소민과는 명확히 구별되었을 것이다. 즉 소리와소민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국가는 소의 일차적인 통치를 소리에게 맡겼으며, 소리는 혈연적 색채를 띤 소 내부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에 대한 지배를 관철시켰을 것이다. 소리들은 이러한 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16) 《}高麗史》 권89, 列傳2, 忠烈王 齊國大長公主.

^{17)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貢賦 예종 3년 2월.

수공업 소들은 국가에 집단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공물을 수취당하고 있었다. 국가는 공물수탈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의 주민들을 등록하여 호를 구성하게 한 후, 편호제에 의하여 공물을 수취하되 편호에 망라된 수공업자들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물량을 규정하는데 뿐 아니라 수공업자들을 소에 결박시키는 데도 유리하였을 것이다.

14세기 중엽에 崔瀣는 《拙藁千百》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榮州의 梨旨銀所는 옛적에는 縣이었는데 중간에 邑人이 국명을 어겨 폐하여籍民 시키고 白金을 稅로 내는 은소로 칭해진 지가 오래다. 이제 그 토인 중에 那壽와 也先不花가 중국 궁정에서 사환으로 열심히 공로를 쌓아 그 공으로 본관을 올려 다시 현으로 삼았다. …銘에 이르기를…전하는 말에 옛날에 고을사람들이 자기 몸을 닦지(修) 못하여서 온 고을사람이 전복되었으며 죄를 간직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폐지되어 銀戶로 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이지현이 은소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 문에서 '적민시켰다'는 것은 호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며, 은소를 은호로 부르 기로 한 것은 은소가 편호제에 의하여 공물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던 사 정과 관련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호는 개별적 세대들로 구성된 자연호 가 아니라 수공업생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정노동력으로 구성 된 법적인 수세단위로서의 편호를 의미한 것이었다.¹⁸⁾

수공업 소에서 진행되던 금·은·동·철·종이·소금 등 그 밖의 생산물들은 결코 자연호에 기초한 개별적인 세대단위의 호로써는 생산을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조건에서 일정한 장정 노동력으로써 협업노동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수공업 소에서는 일부 특수한 부문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편호제에 의하여 노동력이 편성되고 그에 기초하여 공물수탈이 진행되었다.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소민들은 조세는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군현민들과 같이 소민들도 稅布는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반

¹⁸⁾ 흥희유, 앞의 책, 133쪽.

적인 정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소민들은 대부분 그들 소에 맞는 원료나 수공 업품을 납공했을 것이다.19)

수공업 소의 민들은 일반 군현민들보다 가혹한 공물량을 수취 당하였으며, 일반민들과 신분적 범주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공업 소에 대한 수취는 정규적인 상공에 의한 것보다 이른바 별공에 의한 것이 더 심했다. 예종 3년에 "동·철·자기·묵 등의 잡소는 별공물색을 징수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장인들이 고통스러워 도피한다"20)라고 한 기록을 유의하면, 이들 소민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별공·상공의 부담만으로도 과중해서 가혹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공물수취만이 아니라 병역 의무와 잡역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예문관 제학 李先齊가 상소하기를, '…이제 高麗 式目形止案을 살펴 보면, 雜 尺所丁 1,260명, 津江丁 624명, 部曲丁 382명, 驛丁 1,585명'이라고 하였다…(《文 宗實錄》권 4, 문종 즉위년 10월 경신).

무릇 은을 생산하는 은소는 그 居民들의 역을 면제해 주고 은을 채취하게 하여 관에 납입하게 한다(《高麗史》권 79, 食貨 2, 貨幣 공민왕 5년 9월).

위의 사료에서 所丁은 구체적으로 싸움에 참가하는 군인들 같지는 않고 다만 서부지역의 성의 수축과 방어를 위하여 특정의 역을 지고 정발된 자들로 생각된다. 여기서 소의 주민은 특정의 물품생산을 위한 역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특정 역까지도 짊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민들이 잡역으로 인해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납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소 수공업자들은 수공업 소에 묶여 대를 이어가면서 온갖 사회적 멸시 속에서 노동생산물의 거의 전부를 공물로 수취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북지방의 국방경비를 위한 군대복무에도 수시로 징발되었는데, 고려시기에 서북지방에 배치되어 국경경비에 복무하는 소정들만 하여도 상당했을 것이다.

소의 주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역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인의 범주에 들어 가지만 이들의 역은 천역으로 사회적으로는 거의 準賤人의 대우를 받았다. 소민들의 수공업 생산활동은 노예 노동적인 것은 아니고, 자기 경영에 의하

¹⁹⁾ 徐明禧, 앞의 글, 17쪽.

^{20)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貢賦 예종 3년 2월.

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과된 공납품을 제조 납부하는 것은 상당한 노동력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유이민현상이 가중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역은 더욱 천역화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그들이 속해 있는 중앙관청, 소속 군현 그리고 所吏에게까지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유리하는 현상이 심해졌고 결국은 명학소민들처럼 집단적으로 국가에 항거하게 되었다.

3) 민간 수공업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고려의 민간사회에서는 대체로 자가수요를 위한 의류나 관청에 납부하기위한 포물류를 생산했고, 몇몇 수공업분야에서는 전업적 수공업자인 工匠이존재하였다. 이들 공장들은 종종 지방관청의 수공업생산에 동원되거나 공역군으로 징발되어 기술노동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평상시에는 나름대로의 분업체계를 가지고 농촌사회의 주문생산을 담당하였다.

기록이 부족하여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방의 전업적 수공업자들은 충렬왕 22년에 洪子藩이 건의한 상소문²¹⁾에 나타난 유동장 이외에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즉 직물생산부문의 경우 綾・羅 등을 공물로 거두어 들이기로 되어 있던 사실에서 금장・능장・나장 등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금속가공부문의 경우에 거울을 만드는 경장은 민간수공업에서 하나의 독립된 업종으로 존재했다. 즉 고려 말에 우왕은 거울을 주조하는 방법을 배울 목적으로 경장을 궁정에 불러 들였을 정도였다.

금박장도 민간수공업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업종이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활동한 全英甫 같은 사람은 노비출신의 금박장으로서 대호군의 벼슬을 하사받기도 하였다.²²⁾ 피혁 생산부문에서는 홍정장들이 민간수공업자들로 존재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12세기에 수도 개경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彦光과

^{21) 《}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22) 《}高麗史》 권 124, 列傳 37, 全英甫.

같이 홍정업을 통하여 생활토대를 마련한 자들도 있다.23) 또한 피장·갑장·화장들도 민간수공업으로 존재하였으며, 무기생산부문에서는 궁장과 시장이존재하였다. 마구생산부문에서는 12세기 초엽 말달래에 기름칠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업종이 서경에 있었음을 볼 때,24) 말달래를 만드는 장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목공부문에는 목장, 화업부문에는 화업장, 대공예부문에는 죽장 등이 민간수공업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장·칠장·마장 등도 또한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민간수공업에서도 많은 업종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나 귀족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주로 관청수공업이나 소의 생산품으로 해결하였고, 게다가 이들 수공업자들은 기술노동에 자주 동원되어 기술발전을 꾀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농촌지역에도 전업적인 공장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민간수공업의 중심은 역시 농민의 가내수공업이었다.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은 대체로 자가수요를 위한 의료생산과 관부에 납부하기 위한 포물류의 생산이었다.

고려의 직조수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모시 직조업과 마직업이었다. 베는 고려시대 농민들의 기본적인 옷감으로서 사회적 수요가 많았으므로 민간수공업으로 광범하게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모시 직조업도 비교적광범위한 소비대상을 가진 생산부문이었다. 당시에 모시와 베는 그 대부분이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었는데 그들은 자체의 수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공물로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직조수공업이 발전한 것과 함께 참대체품과 자리수공업 및 제지수공업이 또한 민간수공업으로서 발전하였다. 경상도 양산은 일찍부터 참대산지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산주민들 은 참대제품 수공업을 중요한 생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양산

^{23) 《}高麗史》 권 128, 列傳 41, 鄭仲夫.

^{24) 《}高麗史》 권 127, 列傳 40, 妙清.

주민들은 집집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로 각종 용구들을 만들어 딴 물건과 교환하였으며 의식, 조세 그리고 공물도 전적으로 참대수공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²⁵⁾ 이것은 양산지방이 참대제품 생산의 명산지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양산지방민들이 생활자료들을 참대가공품들과 교환하여 해결하고 조세와 공물까지 그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수 공업을 중요한 생업으로 삼고 있었으며 양산이 참대제품 수공업의 중심지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에는 민간수공업으로서 왕골을 원료로 하여 돗자리를 엮으며 방석이나 그 밖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자리수공업이 발전하였다. 당시에 왕골돗자리와 방석들은 만화석, 만화방석 등의 이름으로 외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 돗자리・방석 등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경상도의일부 지역들은 자리수공업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 안동지방은 대표적인 자리수공업산지였다.

제지업도 한층 발전하여 질적으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전주는 종이의 명산지로 알려졌으며, 특히 명표지는 그 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²⁶⁾ 고려시기에는 전주의 명표지 뿐만 아니라 백추지·견지·청지·아청지 등 다양한 종이들이 생산되었다. 특히 견지는 마치 누에 고치실로 만든 것같이 희고 질기며 고상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까지 호평을 받았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수공업으로서 베·모시·비단을 짜는 직조수공업과 참대가공업, 자리수공업, 제지업 등이 광범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생산부문들은 원료·기술·생산조건으로 인해 주로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民들의 광범한 수요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해당수공업의 명산지로 발전하였다.

고려시대의 직조품들은 상품으로서 널리 유통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베는 현물화폐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직조업과 시장과의 관련이 강화되었고, 그것이 직조수공업의 발전을 자극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수공업 중심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폐쇄적인 자연경제가 지배하는 조건

^{25)《}新增東國輿地勝覽》慶尚道 梁山郡 風俗.

^{26) 《}高麗史》 권 105, 列傳 18, 鄭可臣.

아래에서도, 수공업 상품생산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말해 준다.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 · 경제적 존재형태

고려시대에 수공업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혹한 수탈을 당하였다. 관청수공업장에 정발된 수공업자들과 所 수공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공업자들은 수공업제품들을 지방관원들에게 납부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수할 각종 수공업제품의 양을 규정하였다. 이런 수취의 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중한 것이었다. 靖宗 7년 (1041) 정월에 三司가 왕에게 올린 글에 의하면, "각 도에서 지방관원들이 주관하는 주·부의 세공은 1년에 쌀 300섬, 벼 400곡, 금 10량, 백은 2근, 베 50필, 백·적동 50근, 쇠 200근, 소금 300섬, 명주실과 삼실 40근, 기름과 꿀 1섬씩"27)이었다. 여기서 쌀·벼·꿀 등을 제외한 금·은·동·철 등의 금속과베·명주실·삼실 그리고 소금 등은 수공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공업제품들이다. 명주실과 삼실 같은 것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납부된 것이었으나 나머지 수공업제품들은 전업적 수공업자들의 몫이었다. 또한 이 중에는 금소·은소·동소·철소·사소·염소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들도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대부분은 민간수공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것이었다.

국가는 정종 7년에 함경도에서만도 5만 209필의 베를 공물로 수취하였으며,28) 선종 3년(1086)에는 왕태후 책봉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각 도의 군현들로부터 10여만 필의 베를 수취하였다.29) 여기에서 국가는 항상 규정된 액수만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이상의 양을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공업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을 공물로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각종 부역노동에 징발되어 기술노동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했고 또한 군대에 복무하는 의무도 져야 했다. 수공업자들은 고려 초기 이래 계속 진행된 수도의 성과 궁전 건축에 수시로 징발되었다. 당시에는 수도 개경의 도성건축을 비롯하여 서북·동북지방의 국방경비를 위하여 많은 성들이 축조되었다. 덕종 2년(1033)에는 서쪽 압록강구로부터 함경남도 정평 도련포에

^{27)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租稅.

²⁸⁾ 위와 같음.

^{29) 《}高麗史》 권88, 列傳1, 后妃1, 文宗 仁睿順德太后 李氏.

이르는 1,000여 리 장성이 축조되었는데 이러한 축성사업에는 방대한 인원의 청장년들과 수많은 수공업자들이 정발되었다. 이러한 축성사업에 얼마나 많 은 수공업자들과 백성들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은 개경의 나성 축조를 통 해서도 잘 알 수 있다. 《高麗史》권 56, 지리지에 의하면, 수도 개경의 나성 은 약 20년 간의 세월을 거쳐 현종 20년(1029)에 완성되었는데 이 공사에는 30여만 명의 장정과 8.458명의 공장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고려시기에 수공업자들은 귀족층의 불교숭상 때문에 끊임없이 진행되던 사원 축조에도 자주 징발되어 부역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건축공사는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공업자들은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공업경영마저 지탱할 수없었다. 선종 1년(1084)에 대운사와 대안사를 건축했을 때는 수많은 청장년들과 공장들이 징발되어 농사를 망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30) 대운사나 대안사와 같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토목공사에 징발된 수공업자들의 생활형편이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12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문종 2년(1067)에 완성된 2,800칸에 달하는 홍왕사 건축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이르러서는 수공업자들의 생활이 얼마가 곤궁했을까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고려시기의 수공업자들은 또한 일품군이란 명목으로 지방군에 포함되어 공역군으로 복무하였다. 고려시기의 주·현에는 지방군이 조직되어 해당 지방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해당 주·현군의 부대편성은 중앙군과 마찬가지로 보승·정용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일품군이 있었다. 주·현의 지방공병부대로서의 일품군은 북계·동계를 제외한 중부 이남의 이른바 5도의 주·군·현에 배치되어 있었다. 일품군 외에 또한 2, 3품군이 있었는데 이들은 70세 이상의부모를 모신 외독자들로서 자기 마을에 그대로 있으면서 향토보위도 하고 부모봉양도 하게끔 편성된 공역군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죽으면 일반 일품군과마찬가지로 주현의 공역군으로 복무하여야 했다.31) 고종 23년(1236)에 강화도에 수도를 옮긴 무신정권은 각 주·군의 일품군들을 정발하여 강화도 연안의제방을 중축하려 한 일이 있었다. 또한〈淨兜寺石塔記〉에도 일품군들이 돌탑

^{30) 《}高麗史》권 6, 世家 6, 문종 2년 3월 경자.

^{31)《}高麗史》 권81, 志35, 兵1, 工役軍.

건립에 참가한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품군은 군대라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축성, 건축 등을 담당한 노역부대인 공역군들이있다. 그러므로 일품군에는 생산에 종사하고 있던 지방 수공업자들이 주요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지방의 일품군에 대하여 보면, 고려에서는 44개의 주·군·현에 무려 19,882명의 수공업자들이 일품군에 망라되어 공역군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32) 동계에서는 14개 주·현·진에 14경의 공장 혹은 전장들이 공역군으로 정발되어 복무하였다.33) 안변부의 예에 따라 1경을 33명으로 계산하더라도약 500명의 수공업자들이 공역군으로 복무한 것이다. 여기에 북계의 所丁 및 雜尺 1,268명을 합하면 고려시기에 약 2만여 명의 수공업자들이 공역군에 망라되어 토목·건축·축성 등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물론 일품군의 모두가 다 수공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품군 가운데는 수공업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공역군에 있어서도 공역군 전부가수공업자는 아니었으나 많은 부분이 수공업자였다고 인정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수공업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노동생산물을 공물이란 명목으로 현물 그대로 수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품군, 공장, 전장이란 명목으로 군대에 끌려나가 공역군으로서 고된 기술노동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각 주의 일품군은 2교대로 나뉘어 가을에 맞교대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품군에 징발되면 공농일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하던 수공업자들은 농사철을 잃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었던 수공업자들의 생활형편은 매우 비참했다. 그러나 직접 생산자인 민간수공업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의 생산활동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적지 않은 기술을 개발시켰다.

4) 사원 수공업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발달하고 사원경제가 향상되었으므로 사원의 수와

^{32) 《}高麗史》 권83, 志37, 兵3, 州縣軍京畿.

^{33) 《}高麗史》 권83, 志37, 兵3, 州縣軍 東界.

승려의 수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사원의 수공업품 수요가 증대되어 스스로 이를 자급하기에 이르러 사원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사원수공업은 대개 직포 업과 제와업, 그리고 제염업 등에서 발달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된 것이었으나 차차 생산이 증대하여 민간의 수요들을 조달하기에 이르렀다.

《高麗史》열전 제국대장공주전의 기사에 의하면, 충렬왕비인 제국대장공주에게 한 여승이 그의 婢가 짠 白苧布를 헌상하였는데 가늘기가 매미 날개와 같고 화문이 섞여 있어 그 아름다움과 섬세함이 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백저포를 市商에게 보였더니 시상들이 전에 보지 못한 우수한 직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朝鮮佛教通史》에 의하면, "彌陀寺의 여승들이 모두 細綿布를 직접 직조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위의 두 기사에서 직물을 짜낸 사람이 하나는 여승의 皹라는 점에서 노비도 사원 내에서 직물생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승들이 거처하는 사원에서도 직조업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원에서는 직물류를 짜는 이외에도 기와를 굽는 승려도 있었다. 즉 충렬왕이 승려 六然을 강화도에 보내 琉璃瓦를 굽게 하였으며 육연은 광주의 義安土를 가져다가 黃丹을 많이 사용해서 유리와를 구웠는데 품질과 색상이 아주 뛰어나 市商들이 파는 것보다 우수하였다고 한다.34) 그리고 琉璃瓦 같은 것은 승려들이 직접 생산했다기 보다는 사원노비들이 주된 생산자였다고 여겨진다.35)

사원의 이러한 수공업품들은 자가수요에 충당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품의 질이 일반 민간수공업품보다 우수하여 상품으로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여 상 업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원의 상행위는 사원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徐明禧〉

^{34) 《}高麗史》 권 28. 世家 28. 충렬왕 3년 5월 임신.

³⁵⁾ 李相瑄, 〈高麗寺院經濟에 대한 考察〉(《崇實史學》1, 1983), 71~73쪽.

2. 상업과 화폐

1) 국내상업

(1) 도시상업

고려시기의 상업은 크게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으로 나뉘어지며, 국내상업은 다시 도시상업과 지방상업으로 나눌 수 있다.1) 도시의 성격은 역사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농업적인 인구의 대취락이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도시는 수도이므로 개경은 군사상・행정상의 중심지인 관아도시인 동시에 상공업 중심지인 경제도시였다.2) 고려시기의 도시는 수도인 개경을 비롯하여 서경, 동경, 남경 및 牧의 소재지 등 행정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3) 개경 이외 다른 지역의 도시상업 실태는 자료의 제약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경의 시전상업을 중심으로 도시상업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수도 개경은 태조 2년(919)에 건설된 계획도시였다. 수도를 개경에 정하고 궁궐과 관아를 지으면서, 수도를 5부(중·동·서 남·북부)로 나누고 그 밑에 坊과 里의 행정구역을 두었다. 5부 방리제는 태조 2년 처음 실시된 후 성종 6년(987)에 개편되었다가, 현종 15년(1024)에 5부 35방 344리 방리제로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 때 제정된 방리의 수와 방명을 보면 〈표 1〉과 같다.4)

고려시기 도시상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개경의 관설시장인 시전상업이었다. 市廛은 주현의 場市와 구별되는 상설시장이며, 어용시장인 점에서 대표적인 시장조직이었다. 시전은 도시민의 생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관수품

劉敎聖,〈韓國商工業史〉(《韓國文化史大系》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姜萬吉,〈商業과 對外貿易〉(《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²⁾ 河炫網,〈古代-高麗時代 都邑의 形成과 그 性格-〉(《都市問題》2-8, 1967). 趙璣濬、〈經濟發展과 韓國都市成長에 관한 研究〉(《東洋學》7, 1977).

³⁾ 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東京;改造社,1937),727쪽.

^{4)《}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王京 開城府.李基白、《高麗史 兵志 譯註》(경인문화사, 1969), 33쪽.

⟨표 1⟩

개경의 5부 방리제

부명	방수	방 명	리수
동부	7	안정 · 봉향 · 영창 · 송령 · 양제 · 창령 · 홍인	70
남부	5	덕수·덕풍·안홍·덕산·안갑	71
서부	5	삼송 · 오정 · 건복 · 진안 · 향천	81
북부	10	정원 · 법왕 · 흥국 · 오관 · 자운 · 왕륜 · 제상 · 사내 · 사자암 ·	47
		내천왕	
중부	8	남계ㆍ흥원ㆍ홍도ㆍ앵계ㆍ유암ㆍ변양ㆍ광덕ㆍ성화	75

을 조달하고 조세와 공납품 등 국고의 잉여품을 처분하는 기능과 외국사신 과의 互市場, 대외무역의 결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5)

그러므로 5부 방리제에 의해 도시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시전을 설치하였다. 개경에 시전이 처음 설치된 것은 "태조 3년 봄 정월에 송악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여 궁궐을 지었다. 3성·6상서를 두고 9시를 설관하였으며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갈라 5부를 나누고 6위를 두었다"⁶⁾고 한 것처럼, 태조 2년 수도를 개발할 때였다.

그러나 중앙군 조직인 6위는 성종 14년(995)에 처음 정비되었으므로 6위가 태조 2년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고려의 중요한 제도가 이미 건국 초에 완비된 것처럼 보려는 《高麗史》 편찬자의 윤색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전이 태조 2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건국 후 오래지 않아 설치된 것만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7)

태조 2년에 설치되었다는 시전은 어용상인의 영업구역으로서 특정한 장소가 할당되어 있는 이른바「坊市」를 의미하는 것이었다.8) 그런데 徐兢은 《高麗圖經》에서 "왕성에는 본래 방시가 없었다"9)고 하였다.

⁵⁾ 姜萬吉, 앞의 글, 196쪽. 白南雲, 앞의 책, 733~734쪽.

^{6)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3년 정월.

⁷⁾ 李基白, 앞의 책, 13~14쪽.

北村秀人, 〈高麗時代の京市の基礎的考察-位置・形態を中心に-〉(《人文研究》 42-4, 1990), 289等.

朴龍雲,《高麗時代史》上(一志社, 1985), 238~239\.

⁸⁾ 白南雲, 앞의 책, 731쪽.

^{9)《}高麗圖經》 권3, 城邑 坊市.

송대 이전 중국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정치·군사도시였으며 경제도시의 성격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성격은 법제적으로 市制와 坊制를 통해 관철되고 있었다. 시제는 도시 내에 관설 상업구역인「시」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서만 상업을 허용하여 국가 통제 하에 두는 제도이며, 방제는 도시 내부를 가로로 구획하여 도시민을 폐쇄적인 방에 의해 규제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시제와 방제는 당 중기 이후부터 서서히 붕괴되어 송대에들어와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따라서 거주민은 이전과 같이 출입할 때 坊門을 경유하거나 坊正 등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송대의 도시는 법제적으로는 시제와 방제의 붕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0)

徐兢이 개경에 방시가 없다고 한 것은 송대 이전 중국 도시의 방시제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 시전 자체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개경의 시전 구조는 중국의 방제와는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시전은 어디에 어떤 구조로 설치되었을까.

설치 초기의 시전 구조나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서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12세기 초엽에 개경 시전의 北廊 건물 65칸이 불탔다는 기사로 보아,11) 개경의 시전은 長廊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부가 이를 건조하여 시전상인에게 대여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상인들은 일정한 公廊稅를 바쳤을 것이다.12)

개경 시전의 위치나 형태를 보다 상세히 보여 주는 것은 12세기 초의 기록인 《高麗圖經》이다.

① 왕성에는 본래 방시가 없고 오직 廣化門에서 관부 및 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랑이 있어 民居를 가리웠다. 때로 장랑 사이에다 그 坊門을 永通・廣德・興善・通商・存信・資養・孝義・行遜이라 하였다. 그 안에는 실제로 街衢나 市井은 없고 절벽에 초목만 무성하고 황폐한 빈터로 정리되지 않은 땅이 있기까지 하니 다만 밖에서 보기만 좋게 한 것 뿐이다(《高麗圖經》권 3, 城邑 坊市).

② 京市司에서 興國寺 다리까지와, 광화문에서 奉先庫까지의 장랑 수백 칸을

¹⁰⁾ 이상은 李範鶴,〈宋代의 社會와 經濟〉(《講座 中國史》Ⅲ, 지식산업사, 1989), 179~180쪽 및 斯波義信,《宋代商業史研究》(東京:風間書房, 1968)를 요약한 것이다.

^{11) 《}高麗史》권 53, 志 7, 五行 1, 예종 7년 9월 을축.

¹²⁾ 姜萬吉, 앞의 글, 196~197쪽.

만들었는데, 이것은 민의 주거가 좁고 누추하며 질서가 없고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워 사람들에게 그 누추함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高麗圖經》권 3. 城邑 國城).

③ 大市·京市 2司는 남쪽 큰 거리에 있는데 동서로 마주하고 있으니, 關市의 정사를 균형있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高麗圖經》권 16, 官府 臺省).

이들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시전의 위치는 대략 다음과 같다. 시전은 왕성의 서문인 宣義門에서 왕성 안으로 들어 가는 도로와 동남문의 長覇門(후의 정안문)에서 입성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十字街를 남쪽 기점으로 하여, 그곳에서 북으로 이어져서 홍국사를 지나 병부의 서쪽에 이르러 왕성의 동문인 광화문에서 동으로 뻗은 도로와 만나면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 광화문에이르는 도로 즉 南大街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안문이나 선의문에서 성안으로들어오는 도로는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임무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각종물자가 지나가는 왕성의 동맥이고, 십자가는 그 교차점에 해당한다. 京市는바로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경시 입지조건의 중요성을 해야릴 수 있다.13)

시전은 도로의 양편에 길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상설 점포인 장랑의형태로 되어 있었다. 徐兢은 이러한 장랑이 민의 주거지가 좁고 누추하여 이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장랑은 곳곳에 끊어져있고 거기에는 장랑의 배후에 있는 방리를 출입하는 문인 방문이 설치되어있었다. 그리고 방문에는 영통・광덕・홍선・통상・존신・자양・효의・행손과 같은 坊名을 표시하는 표찰이 붙어 있었다.14)

개경의 시전은 도시민의 생활품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주로 관수품을 조달하고 국가의 잉여품을 처분하는 기능을 가진 어용상점으로서 국가의 보호 아래 발전되었으므로, 시전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시전

¹³⁾ 北村秀人, 앞의 글, 291~292쪽.

¹⁴⁾ 北村秀人, 위의 글, 267쪽.

그러나 종래 유교성·강만길·김병하·전수병·김동철·박용운·전병무 등 대부분의 고려시기 상공업사 연구에서는 영통·광덕·홍선·통상 등을 간판에 쓰여진 시전의 상호명으로 파악하였다. 북한의《조선전사》6(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173쪽에서는 영통·광덕 등 간판을 붙인 상업지구로 홍희유,《조선상업사》—고대 중세—(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59), 70쪽에서는 문 위에 영통·광덕 등 현판을 단 8개의 상업지구로 파악하고 있다.

을 감독하는 관부로서 京市署가 설치되었다.¹⁵⁾

《高麗圖經》에서는 남대가에 大市司·京市司가 동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關市의 정사를 균형있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궁이 말하는 경시사는 경시서를 가리키나, 대시사는 고려의 관부 명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시사에 해당하는 가능성을 가진 관사로는 街衢所를 들 수 있다. 가구소는 문종 30년 (1076)에 설치되었으며, 남대가의 통행을 감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지닌 상설 관사였다. 경시서는 시전에서의 물가의 감독과 가격의 공정, 미곡 매매의 감독과 가격의 공정, 상평창미의 매매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경시서가 남대가의 경시로서의 측면을 관할하는 기구라면, 가구소는 남대가의 街路로서의 측면을 주로 감독하는 포괄적인 경시 감독기구라고 하겠다.16)

경시서의 직제를 보면 목종 때 이미 京市署令이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 다시 확대되어 令 1인(정7품), 丞 2인(정8품), 이속으로 史 3인, 記官 2인 등을 두었다.17) 목종 때에 비해 문종 때에는 경시서의 직제가 늘어나고 또 경시서의 장관인 경시서령의 전시과 지급 규정이 13과에서 11과로 향상된 것은 직제가 확대·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8)

이러한 직제의 확대는 경시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경시의 번영은 鐵錢과 布幣의 병용에 의한 상품교환 관계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19) 경시서는 상위의 관사로서 어사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어사대가 경시를 감찰하고, 경시서의 職掌에 깊이 관여한 것은 고려가 경시를 중시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20)

한편 국가는 관영상점을 개설하여 직접 상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개경에는 書籍店・幞頭店・大藥局, 서경에는 鹽店・綾羅店・藥店 등이 있었다. 이들은 생산과 판매를 겸한 관영 상공업체였다. 이들 관영상점은 주로 지배층을 대상으로 생산・판매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된다.²¹⁾

¹⁵⁾ 白南雲, 앞의 책, 734쪽.

¹⁶⁾ 北村秀人, 앞의 글, 274~282쪽.

^{17)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京市署.

¹⁸⁾ 金東哲.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釜大史學》9. 1985). 225쪽.

¹⁹⁾ 白南雲, 앞의 책, 731쪽.

²⁰⁾ 北村秀人, 앞의 글, 276・292쪽.

²¹⁾ 홍희유, 앞의 책, 68~69쪽.

이 밖에도 개경에는 茶店²²⁾·酒店·食味店 등 관에서 설치한 관영상점들이 있었다. 이들 상점은 화폐유통책과의 관련 하에 발달하였다. 성종 때에는 개경에 주점을 설치했으며, 목종 때에는 다점·주점·식미점에서만 종전대로 전화를 사용하게 했으며, 숙종 때는 화폐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경과 주현에 각각 左右 酒務와 酒食店을 설치하였다. 특히 다점과 주점은 송대처럼 茶酒 전매제를 실시하여 화폐유통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商稅 수입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였을지도 모른다.²³⁾

개경의 시전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하였던 시전상인들은 국가에서 시전을 대여받거나 권세가·사원세력들과 결탁하여 시전을 경영하였을 것이다. 이들 시전상인 외에도 將作監 상인과 같이 각 관부에 출입하면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인도 존재하고 있었다.²⁴⁾ 고려 후기에 공물 대납업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京主人이 명종 8년(1178)에 조성된 김제군 金山寺 향로의 명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²⁵⁾ 고려 전기에도 경주인은 공물대납을 담당하였던 것같다. 고려 전기부터 공물대납이 나타나면서 각 관부에는 장작감 상인과 같은 공물대납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²⁶⁾

(2) 지방상업

가. 장시

개경 등에서의 도시상업이 상설점포를 가진 시전을 중심으로 발전한 데비해 지방상업은 주로 비상설적인 장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고려시기의 장시는 대개 方午에 열렸고 교역에는 화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쌀이나 베를 사용하였다.²⁷⁾ 방오는 正南으로 낮 午時이며 日中이다. 일중에 장이열린다는 것은 교역자가 개시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한다.

²²⁾ 全完吉,〈高麗時代의 茶文化論(其一)-茶店의 存在와 意味-〉(《民族文化研究》20, 1987).

²³⁾ 萘雄錫,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韓國文化》9, 1988), 88쪽.

²⁴⁾ 蔡雄錫, 위의 글, 98쪽.

²⁵⁾ 李光麟, 〈京主人研究〉(《人文科學》7, 1962), 238~242\.

²⁶⁾ 朴祥鎬, 〈高麗時期의 國內商業〉(建國大 碩士學位論文, 1988), 7~8\,

^{27) 《}宋史》 권 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

하루 왕복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교역하므로 아침에 나와서 장을 보고 저녁까지는 귀가할 수 있도록 일중에 出市가 열렸던 것이다.28) 이러한 장시의 모습은 《高麗圖經》에 좀 더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서궁은 고려의 풍속에는 居肆가 없고 오직 일중에 墟가 서며, 남녀노소·관리·工技들이 각기 자기 가진 것으로써 교역하고, 泉貨를 사용하는 법은 없으며, 오직 저포·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日用의 세미한 것으로 疋이나 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쌀로 錙銖를 계산하여 상환하고 있지만, 백성은 오랫동안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스스로 편하게 여긴다고 하였다.29) 서궁은 장시를 「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허는 본래 중국 송대에 양자강 이남 강남지방에서 열리던 촌의 정기시장 즉 출시를 일컫는 것이었다.30)

중국의 경우 상품을 교환하는 장소로서의 시장은《周易》繫辭傳下의 "日中爲市"라고 한 것처럼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그런데 송대에 강남지방의 농업·교통·산업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교환이 발달하여 허시·亥市·촌시·산시·야시·초시·소시·朝市·早市 등 다양한 명칭의 村市가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명칭의 촌시 중「墟市」는 촌락의 시로서 교역이 영세한 것이 특징이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의 개최가 정기 간헐적이라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31)

고려에서 일중에 장이 선다는 표현은 《周易》의 '日中爲市'를 그대로 옮긴 관념적인 표현인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서궁은 고려의 장시가 자기 나라인 송나라의 촌시인 허시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³²⁾

농촌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이 진전됨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내제품의 일부를 가져와 필요한 생활품을 구입하는 교역이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역은 개인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교역이 중대함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高麗圖經》에 나타나는 촌시는 비록「有無相遷」식의 교역수준을 보이지만, 그

²⁸⁾ 白南雲, 앞의 책, 735쪽.

李景植, 〈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韓國史研究》 57, 1987), 76쪽.

^{29) 《}高麗圖經》 권 3. 城邑 貿易.

³⁰⁾ 李景植, 앞의 글, 76쪽.

³¹⁾ 斯波義信, 앞의 책 337~343쪽.

³²⁾ 李景植, 앞의 글, 76쪽.

규모는 단순한 물자교환 단계를 넘어서 송대의 강남지방 촌의 정기시장에 비견될 정도였다.³³⁾

이 장시는 농민만의 교역처는 아니었다. 서긍의 표현처럼 장시에는 농민· 수공업자 등 직접생산자 외에 관리 등 여러 층이, 그리고 남녀노소 등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여 교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상하 모두가 상업 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서궁은 상인들이 멀리 가는 것이 없고, 오직 일중에 도시로 달려가서 有無를 교역한다고 하였다.³⁴⁾ 이러한 표현은 문화적·경제적 우월의식에서 고려의 경제발전 단계를 낮추어 보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장시는 개시장소가 주현의 치소 근처인 州縣市의 성격이었다. 목종·숙종 때 주현에 주식점을 설치하여 화폐를 통용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화폐유통책은 바로 이러한 주현의 행정중심지에 설치된 장시를 기반으로 실시된 조치였다.³⁵⁾

주현의 장시에서 통용되는 교역 매개물은 쌀과 베였다. 이들은 이미 등가 기준의 화폐로서의 보편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이 밖에 銀瓶도 사용되고 있었다. 농민교역은 생필품의 거래가 중심이었고 거래규모도 적었으므로 쌀과 베가 중심이었다. 특히 쌀은 일용품의 소규모 거래에서 가장 소단위까지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36) 이러한 장시가 며칠에 한 번씩 열렸으며 또 전국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日中無墟'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달에 일정 기간마다 일정 횟수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는 아니었다.37)

³³⁾ 남원우, 〈15세기 유통경제와 농민〉(《역사와 현실》 5, 1991), 79~80쪽.

^{34) 《}高麗圖經》 권 19, 民庶.

³⁵⁾ 李景植, 앞의 글, 77쪽.

^{36) 《}高麗圖經》권 3, 城邑 貿易. 李景植, 위의 글, 77~78쪽.

³⁷⁾ 李景植, 위의 글, 78쪽. 송대의 촌시는 10간 12지의 특정한 날에 열리는 정기시가 대부분이었다(斯波義信,〈中國中世の商業〉,《中世史講座》3, 學生社, 1982, 211~212쪽). 전술한 것처럼 서긍이 고려의 장시를 송의 촌시와 비슷하다고 인식하였다면, 고려의 주현시도 일정 횟수의 정기성을 띠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분명하지 않다. 草市는 10일에 1~4회 농촌의 가로상이나 공지에서 열렸다. 교역된 물자는 주로 쌀, 조, 보리, 땔감, 채소, 물고기, 가축, 과실 등이었으나, 농촌가공품이나 수공업원료인 마포, 실, 기름, 옻칠 등도 거래되었다(李範鶴, 앞의 글, 181쪽).

서궁은 고려에서 민간교역이 일중에 이루어지는 원인을 주군의 토산이 모두供上으로 들어가 상인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지적은 국가의 농민지배와 수취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한 요인에 불과한 것이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농민의 잉여물이 이들 장시와는 별도의 유통망에 얽혀 교역·흡수되고 있었던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런 교역은 사원·궁원·양반·토호들이 주도하였다.이들은 强與·强賣·强賈·强市·反同·互市로 표현되는 부등가교환을 통해,세포·능라·갈(대)자리 등 고급 수공업품을 비롯하여 초피·송자·인삼·봉밀·황납 등 진기한 물품과 쌀·콩 등의 일용품까지 강제 매매하였다. 농민의잉여생산물이 이들 지배세력에 의해 사적·독점적으로 추진되는 抑賣·抑買를통해 교역되었으므로, 직접 생산자 사이의 교역은 일중에 서로의 물품을 교환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민·수공업자 등 직접 생산자층이독자적인 시장기구를 형성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38)

억매매·호시·반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강제 교역 형태는 당시에 발달한 대외무역과 연결되어 전개되었으며, 防納행위와 함께 직접 생산자층의 잉여 축적과 그에 기반한 유통경제의 발달을 억제하였다.³⁹⁾ 고려시기의 장시는 조선 전기의 장시처럼 시를 이루면서 주요한 교역장소로 기능하였으나, 개시지역, 교역참여자, 출시일 등에서 완전한 농촌 시장으로 성립하지는 못하였다.⁴⁰⁾

나. 행상의 상업활동

고려시기 농민교역은 전적으로 장시에만 의존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해 안이나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나 육로가 발달한 교통의 요지에는 선상이나 보부상 등 행상의 왕래가 잦았다. 이들은 장시 사이를 순회하며 그 상권을 연결하는 비교적 전업적인 상인이었다. 행상은 육로를 따라 장사하는 陸商 과, 강이나 바다를 따라 배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船商의 두 유형으로 나눌

³⁸⁾ 李景植, 앞의 글, 79~82쪽.

³⁹⁾ 채웅석, 〈12, 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역사와 현실》3, 1990), 55~56쪽.

⁴⁰⁾ 李景植, 앞의 글, 79쪽. 남원우, 앞의 글, 79~80쪽.

수 있다.41)

가) 육상의 상업활동

행상이 상업활동을 할 때 물품이 소량이고 운송거리가 짧으면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다녀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점이 많고 무거우며 먼 거리를 운반할 때는 수레나 말을 많이 이용하였다. 수레는 도로의 발달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거리 운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이었다. 이런 운송 수단에 대해 서궁은, 고려는 산이 많고 도로가 험하여 수레로 운반하기가 어 려우므로 가벼운 것은 사람이 지고 가지만, 이것저것 싣는 데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방법은 2개의 그릇을 좌우에 장치하여 말등에 걸쳐 놓고 그 안에 물건을 닦아 운반한다고 하였다.(42)

육상의 행상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은 院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원은 국가 공무 여행자를 비롯하여 일반 여행자와 행상들이 묵는 숙박소였다. 따라서 원은 역참과 역참 사이, 나루터, 고개 아래 등 사람의 통행이 잦은 교통의 요지에 설치되었다. 43) 국가에서 원을 설치한 것은 상인이나 나그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14세기 말 경주와 울산 사이에 있는 德方里에 설치된 德方院은 어염을 매매하는 상인이나 나그네의 숙박을 위해 설치되었다. 44) 따라서 원은 상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설치되었으며 동시에 상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상인의 편의 보장이나 상업발전과 관련하여 설치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업이 발전함에따라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은 일부 원의 경우는 그 자체가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여 가기도 하였다. 45)

원은 사찰이나 승려가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사원이 원거리 교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의 설치와 운영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사원 이 유통구조 상에서 차지하는 기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원은 더욱 발전하

⁴¹⁾ 홍희유, 앞의 책, 79쪽.

朴平植、〈朝鮮前期의 行商과 地方交易〉(《東方學志》77·78·79, 1993), 333\へ.

^{42)《}高麗圖經》 권 15. 車馬 雜載.

⁴³⁾ 홍희유, 앞의 책, 80쪽.

⁴⁴⁾ 權近, 《陽村集》 권 13, 記類, 德方院記.

⁴⁵⁾ 흥희유, 앞의 책, 80쪽.

였으며, 사원은 원을 장악함으로써 유통구조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46)

행상은 원칙적으로는 본관에 편제되어 있었다. 현종 5년(1014)에 商旅가 죽었는데 성명과 본관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임시로 매장하되 나이와 용모를 기록하여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영구 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47) 이 규정에 의하면 행상은 본관에 편제되어 있으면서도, 본관지역을 벗어나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생산지가 국한되어 지역사회 안의 분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환경제의 경우에는 이들 행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48)

육상의 상업활동은 도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전라도 장수의 六十峴이나 운봉의 八良峴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갯길이었다. 구례의 潺水津이나 未草栗峴은 구례와 순천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었다. 49) 이러한 고갯길이나 지름길은 육상들의 중요한 상업로 기능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 선상의 상업활동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선상은 물품의 다량·원거리 수송이 용이하였다는 점에서 육로를 이용하는 육상에 비하면 상업활동의 규모가 훨씬 큰 상인이었다.

12세기 초의 한 기록에 의하면 珍島縣民 漢白 등 8명이 매매차 제주도에 가려다 태풍을 만나 송의 明州에 표류한 적이 있었다.50) 매매차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전업적인 선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라도의 선상들은 자기나 미곡을 싣고 제주도에 매매하러 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선상은 어염・미곡・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전업적인 상인으로 지방과 지방이나, 지방과 중앙의 상권을 연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선장은 직접 매매활동도 하였겠지만, 그 매매과정에는 중간매체로 보부상

⁴⁶⁾ 李炳熙,《高麗後期 寺院經濟의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108~109쪽.

^{47) 《}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5년 6월 경신.

⁴⁸⁾ 蔡雄錫, 앞의 글(1988), 106쪽.

^{49) 《}高麗史》 권 57, 志 11, 地理 2, 全羅道 長水・雲峯・求禮縣.

^{50) 《}高麗史》 권 13, 世家 13, 예종 8년 6월 경술.

등 육상이 존재했을 것이다. 선상의 상업활동은 전라도 지역에만 국한된 현 상은 아니었다.⁵¹⁾

선상의 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完島 해저유물이다. 1983년 12월 19일~30일과 1984년 3월 15일~5월 23일 2차에 걸쳐 발굴된 完島 漁頭里 해저유물조사에서는 선체를 비롯하여 靑磁 30,645점, 雜釉 26점을 비롯하여 토제유물 2점, 철제유물 18점, 목제유물 9점, 석제유물 1점 등 총 30,701점이 인양되었다. 유물은 대체로 11세기인 고려 초기의 유물로서 대부분 청자였다. 이들 유물은 한 배에 실려서 가다가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서, 대부분 상품으로서 제작 운반되던 것이었다. 청자의 대부분은 대접과 접시로서 일상생활품으로 제작 판매된 것이었다. 당시 반상기의 대종은 대접과 접시이며, 식기는 대형 대접과 소형 대접각 3점과 납작한 접시 2점 그리고 口緣이 직립된 조금 오목한 접시 1점이한 벌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목선은 분명히 우리 나라 목선으로서 연안 운항용의 소목전이었다.52)

고려시기의 선상은 완도 해저유물에서 인양된 것과 같은 소형 목선에 상품을 싣고 연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배 한 척에서 3만여 점의 도자기가 인양되었다는 것은 당시 선상의 상업활동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선상의 상업활동의 하나는 조운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고려시기의 대표적인 수상 교통로인 강이나53)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漕運은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운송체계였다.54) 따라서 이러한 조운망을 중심으로 지방의 유통기구가 형성되고 있었다.55)

이러한 선상들의 상업활동은 강가나 바닷가를 중심으로 지방 장시를 발전 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56) 국가는 각 도의 關防이나 주요한 하천의 津頭 등 교통요충지에서 상인들의 통과세로서 商稅를 징수하였다.57) 내륙 및

⁵¹⁾ 金東哲, 앞의 글, 220~221쪽.

⁵²⁾ 文化財管理局, 《莞島海底遺物》(1985).

⁵³⁾ 吉田光男、〈高麗時代の水運機構「江」について〉(《社會經濟史學》46-4, 1980).

⁵⁴⁾ 北村秀人、〈高麗時代の漕倉制について〉(《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⁵⁵⁾ 남원우, 앞의 글, 83쪽.

⁵⁶⁾ 金三顯. 〈고려후기 場市에 관한 연구〉(《明知史論》 4, 1992), 83~85쪽.

⁵⁷⁾ 白南雲, 앞의 책, 436쪽.

연해의 수로를 통한 선상의 활약과 상업적 분위기는 한강을 비롯한 다른 주요 수로에서도 전개되었으며, 무신집권기 이후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58)

고려 전기의 상품유통의 발달에 따라 도량형도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국가에서는 상품유통의 확대ㆍ발전과정을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도량형을 정비하였다. 정종 6년(1040) 2월에는 자ㆍ말ㆍ저울의 규격을 제정하였고, 문종 7년(1053)에는 서로 다른 물건을 재는 말의 규격을 각각 다르게 제정하였다. 도량형의 정비는 상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보다 쉽게 하고 조세 등 현물 수탈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관련된 것이지만, 동시에 상품유통의 발전을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59)

2) 대외무역

태조 王建의 선대인 康忠이나 作帝建의 혼인설화가 모두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왕건의 선대는 신라 말에 크게 일어났던 해상세력이었다.60) 그러므로 고려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통교를 통해 교역하였다. 태조 17년(934) 7월에 고려의 상선이 後唐 登州에 가서 교역하였으며, 같은 해10월에는 고려의 使船이 靑州에서 무역을 하였다. 광종 9년(958)에는 後周에서 비단 수천 필로 구리를 무역해 왔다.61)

고려 전기의 대외무역은 송을 비롯하여 요·금·일본 등 주변 나라와 행해지고 있었으며, 멀리 대식국상인과도 교역할 만큼 교역대상이 광범위하였다. 각국의 海上船隊가 개경의 문호인 예성강 하구의 碧瀾渡를 중심으로 몰려옴으로써, 벽란도는 국제무역항으로 변창하였다.62)

⁵⁸⁾ 徐聖鎬、〈高麗 武臣執權期 商工業의 전개〉(《國史館論叢》37, 1992), 99쪽.

⁵⁹⁾ 채태형, 〈10~12세기의 국내상업과 대외무역 및 화폐유통의 발전〉(《력사과학론문집》13, 1988), 219~221쪽.

⁶⁰⁾ 朴漢高,〈王建世系의 貿易活動에 對하여-그들의 出身究明을 中心으로-〉(《史 叢》10, 1965).

⁶¹⁾ 金庠基,《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1), 71~72 · 200\.

⁶²⁾ 金庠基,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예성항(禮成港)을 중심으로-〉(《국사상 의 제문제》4. 國史編纂委員會, 1959).

(1) 송과의 무역

양국간의 국교는 광종 13년(962)에 처음 시작되었다. 송과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이 행하여져 성종 때에는 꽤 번성하였다.63) 민간무역은 현종 때부터 성행하였다.송은 신종 때부터 고려와 결탁하여 동북의 강적인 요를 견제하려고 親麗策을 실시하였다.친려책은 상인의 알선을 필요로 하였다.이러한 정치적 관계에 따라 상인의활동은 활발하게 되었다.64) 宋商의 내항은 현종 3년(1012)에서 충렬왕 4년(1278)까지 126회에 이르며,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아 약 150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매회 내왕 인원은 50명 내외였다.그런데 현종 3년 이전이라고해서 송상의 내항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65)

송상의 내항은 7~8월에 가장 많았다. 7월에 약 22회, 8월에 약 38회로 전체의 약 반 정도였다. 이것은 서남계절풍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0월에 10회, 11월에 8회 내항하였다. 11월에 역풍으로 내항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횟수가 많은 것은 11월에 거행되는 팔관회를 기회로일종의 入貢貿易을 했기 때문이다. 송상은 대개 7~8월에 와서 팔관회를 거친 후 북풍을 이용하여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66)

항로는 남북항로가 그 주된 간선이었다. 북선항로는 산동 등주 방면에서 동북 직선로에 의해 대동강 어구 椒島를 거쳐 옹진항 또는 예성강에 이르는 항로로, 문종 28년 무렵까지의 주항로였다. 거란족의 강성에 의해 북선항로가 위험해지고 중국 남부의 국제무역이 번성하면서 문종 28년 무렵 이후에는 남선항로가 발달하였다. 남선항로는 明州에서 동북으로 黑山島에 이르고다시 동북행하여 蝟島・古群山島 등 서해안 도서를 거쳐 예성강에 이르는 항로였다. 당시의 항정 일수는 계절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67)

⁶³⁾ 丸龜金作、〈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二 (《朝鮮學報》18, 1961), 59쪽.

⁶⁴⁾ 金庠基,〈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7, 1937), 5~6쪽.

⁶⁵⁾ 全海宗、〈高麗와 宋과의 交流〉(《國史館論叢》8, 1989), 13~16쪽.

⁶⁶⁾ 金庠基, 앞의 글(1937), 21~22쪽.

^{----,} 앞의 글(1959), 52~53쪽.

⁶⁷⁾ 金庠基, 위의 글(1937), 34~39쪽.

金渭顯,〈麗宋關係의 그 航路考〉(《關大論文集》6, 1978), 250~259\.

姜吉仲,〈南宋과 高麗의 政治外交와 貿易關係에 대한 考察〉(《慶熙史學》16・ 17, 1991), 184쪽.

송상의 출신지역을 보면 泉州・廣東・明州・福州・台州 등 남쪽 지역, 특히 천주・명주 상인들이 많았다.68) 명주는 고려나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내외상선의 발착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고려에 오는 송상은 명주 市舶司에서 발급하는 公憑을 가져야 하며, 귀국 때에도 시박사에서 귀환수속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69)

무역 방식은 조공무역과 상인에 의한 무역인 互市로 대별되었다. 양국 사절의 왕래에는 國信物이 贈答의 형식으로 교환되었으며, 사행을 중심으로 일반 무역이 성행하였다. 상인들의 무역은 합법적인 것과 밀무역으로 나뉘어진다. 고려에서는 외국 상선을 禮賓省에서 접제하고, 무역품은 監檢御使가 禁物 유무를 조사하였다. 중국에서는 고려 상선이 등주・명주에 입항하면 입항세를 내야 했고, 특수물종에 한하여 博買(官買)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일반 교역을 할 수 있었다. 한편 밀무역에 관한 엄격한 금지조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밀무역이 매우 성행하였다.70)

남송 말경 명주에서는 외국 상선에 대해 1/15의 入口稅를 징수하였다. 그런데 고려 상선에 대해서는 1/19을 징수하였다. 이것은 출입이 빈번한 고려 상선에 대한 특혜였다. 이로 보아 고려 상인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였던 것같다.71)

무역품을 보면 수출품은 금·은·구리·인삼·송자·문피·황칠 등 원료품, 각색 능라·세저포·세마포·백지·향유·금은동기·나전기구·완초석·부채· 금은장도·낭미필·송연묵 등 가공품이 중심이고, 유황·도검·청서피 등 일 본·여진산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입품은 능견금라·자기·금박·약재· 차·서적·악기·금은전 등이며, 특히 서남아시아산 향약·서각·상아·산호·

⁶⁸⁾ 金庠基, 앞의 글(1937), 23쪽.

森克己、〈日本・高麗來航の宋商人〉(《朝鮮學報》9, 1956).

宋 晞,〈明州在宋麗貿易史上的地位〉(《古代中韓日關係研究》, Centre of Asian Studies Univ. of HONG KONG, 1987).

陳高華,〈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舶商〉(《海交史研究》2,中國海外交通史研究》,中國海外交通史研究會,1980).

⁶⁹⁾ 森克己, 위의 글, 224~226쪽.

宋 晞, 위의 글, 156쪽.

⁷⁰⁾ 金庠基, 앞의 글(1937), 25~30쪽.

⁷¹⁾ 金庠基, 앞의 책, 200~201쪽.

호박・珠琲・빈철・수정・소목 등도 송의 중계무역에 의해 수입되었다.72)

수출품 중에는 종이를 비롯하여 부채나 문방 4보를 이루는 필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고려 종이는 아름답고 질겨서 필기에 쓰이는 외에도 장정이나 背貼에도 많이 쓰였으며, 송의 溫州産보다도 상품적 가치가 높았다. 고려 종이는 사신이나 상인이 잘 다니는 수도나 항구만이 아니라, 長江유역 안쪽에까지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고려의 문방구는 송인에 의해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上品의 종이 뿐만 아니라 송인이 讚賞한 문방 4보 모두를 다 만들었다는 것은 고려의 공예수준이 높았음을 시사해 준다.73)

무역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이 주목된다.

첫째, 교역품 중에는 사치품과 무기류가 많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교역권의 내용이 우수한 문화의 전파라는 면과 아울러 각국 지배층의 사치적 수요와 군사적 수요에 크게 규정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고려의 수출품목은 국가의 수취체제와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강제적 교역품목과 거의 일치한다. 고려 전기 수취체제나 지배층의 강제적 상행위가 대외무역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배층의 사치와 군사적 목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외무역은 선진적인 직조기술, 농업기술, 의술 등을 부수적으로 도입해 주었으나, 그 국내기반은 피지배층의 경제적 희생 위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셋째, 금・은・동 특히 금속화폐의 재료로 쓰이는 은・동이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송에서는 국내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대외적으로 동이슬람권과의 교역에서 중국 은의 서방유출 현상과 주변국에 대한 막대한 歲幣・賜與로 인하여 은 수출량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은 수요의 증가는 11세기 이후 은값 폭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북송의 화폐정책은 元豊(1078~1085) 이후 주목되는 변화를 보였다. 동전・철전 주조가 감소하고 대신 은전이 새로운 화폐로 상정되었다. 송의 은 수요변동은 동아시아 교역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은 수출도 그 영향권에서 예외는 아니었다.74

⁷²⁾ 金庠基, 앞의 글(1937), 33~34쪽.

⁷³⁾ 池田溫、〈新羅・高麗時代 東亞地域紙張의 國際流通에 관하여〉(《大東文化研究》 23. 1989), 195~196等。

⁷⁴⁾ 이상은 蔡雄錫, 앞의 글(1988), 109~113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2) 거란 · 요와의 무역

고려와 거란과의 교섭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태조 5년(922)에 거란이 낙타와 말, 모직물을 보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북진정책과 충돌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평화적인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徐熙의 외교로 강화가 성립된 후, 목종 8년(1005)에 保州(義州)에 호시장인 權場이 설치되어 물품이 거래되었다. 보주의 각장무역은 현종 원년(1010) 거란의 2차 침입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문종 16년(1062)에는 宣義軍 남쪽에 買賣院을 설치하고, 선종 3년(1086)에는 압록강변에 각장을 재개하여 무역을 하려고 했으나, 강동 6진의 문제이후 양국 사이에 새로운 분쟁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선종 5년에도 각장설치가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고려는 송과의 교역에서 경제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서 거란과의 무역은 절실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각장 설치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각장무역이 폐지됨에 따라 양국 사이에는 의례적인 사행무역이 주가 되고, 일부 밀무역도 이루어졌다. 무역품목은 금·은·동 등 금속류, 저포 등 포백 류, 龍鬚草席·藤器 등 공예품, 필묵·저지 등 지묵류, 鷹鶻類가 수출품의 주 종이었다. 거란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능라·丹絲, 양을 주로 한 가축류 등이 주종이었다. 전후 200년 간에 걸친 양국 관계는 대부분 긴장관계가 계속될 뿐 통상과 무역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못하였다. 75)

(3) 여진 · 금과의 무역

고려와 여진과의 사이에 교역이 처음 이루어진 최초의 기록은 10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定宗 3년(948)에 동여진의 大匡 蘇無盖 등이 말 700필과 방물

⁷⁵⁾ 거란 · 요와의 무역은 다음 글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丸龜金作、〈高麗と契丹・女眞との貿易關係〉(《歷史學研究》5-2, 1935).

李龍範. 〈麗丹貿易考〉(《東國史學》3. 1955).

徐炳國.〈高麗・宋・潦의 三角貿易攷〉(《白山學報》15. 1973).

姜萬吉, 앞의 글.

朴龍雲, 앞의 책.

홍희유, 앞의 책.

을 가져와 바쳤다. 이에 고려에서는 말을 3등으로 나누어 값을 지불하였다. 이후 여진의 각 부족은 고려와 교역을 계속하여 주로 말과 철갑·번미·부 금·궁시·선박·표피·수달피·청서피·낙타·황모 등을 진헌하였다.

고려는 여진에 대해 토벌과 위무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귀부해 오는 여진에 대해 납공 형식을 통한 교역을 권장하였다. 귀부하는 부족이 많아짐에 따라 교역의 폭도 넓어져 갔다. 납공 형식의 교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문종 35년에 동여진의 추장 陳順 등 23명이 와서 말을 바쳤는데 이 때부터 여진인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경우 15일 이상 개경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여진인이 진헌물을 가지고 개경에 오면 객관에 머물게 하고 관리의 입회 아래 물품을 교환하게 하였던 것이라 추측된다.

예종 10년(1115)에 完顏部의 阿骨打에 의해 금이 건국된 후 종래의 납공 방식에서 송과 같은 國信物 교역으로 바뀌었다. 고려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일종의 사행무역이 실시되었다. 명종 13년(1183)에는 매년 금에 사신가는 사람이상품 교역의 이익을 노려 토산품을 많이 가져가 운반하는 페단이 많으므로, 그 페단을 없애기 위하여 사신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제한하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파면시킬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장군 李文中・韓正修가 금에 사신가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종래의 관례에따라 제한을 없애고자 청하여, 사행의 휴대품 제한 규정은 철폐되고 말았다.76)

사신의 왕래와 관련하여 사무역도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려 -송-금의 삼각 외교관계가 미묘하여 고려측으로서는 언제나 중립정책을 취하였다. 교역관계는 외교문제에 제약되어 항상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77) 여진에서 수입한 물품은 금·말·화살·철갑 등 무기류·초피·청서피·황모 등이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말이었다. 여진의 군수품이

^{76)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3년 8월.

⁷⁷⁾ 여진·금과의 무역은 姜萬吉, 앞의 글, 210~212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여진· 금과의 무역은 다음 연구도 주목된다.

丸龜金作, 앞의 글(1935).

三上次男,〈高麗顯宗朝に於ける麗眞交易〉(《加藤博士還曆記念 東洋史集説》), 富 山房, 1941).

홍희유, 앞의 책.

田炳武、〈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韓國史研究》78, 1992).

고려에 가장 많이 공급된 시기는 현종 즉위를 전후한 시기이며 현종 때는 34회, 문종 때는 47회나 말을 공납하였다.78) 고려의 수출품은 銀器·衣帶·布錦類 등이 주였다.

(4) 일본과의 무역

대일무역은 사절의 왕래를 통한 進奉무역이 중심이었다. 양국 사이의 사절 내왕은 일본측 기록인《日本紀略》에 태조 20년(937) 8월 高麗國牒을 열어 보았다고 한 것이 처음이다. 태조 22년 3월에는 太宰府가 고려 사자를 돌려보냈다고 하였다.79) 일본 사절이 고려에 온 것은《日本紀略》에 의하면 광종 25년(974) 윤 10월에 交易使가 고려에 다녀왔다고 한 기록이 처음이다.80) 그러나 이 때 온 교역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양국의 교역관계가 기록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문종 10년(1056)에 藤原朝臣 賴忠 등 30명이 金州(김해)에 왔던 때부터이다. 이 때 어떤 물품이 교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김해에는 일본 사절을 위한 客館이 있었다.81) 일본 사절의 명칭을 보면 日本國使・薩摩州使・對馬島使・壹岐島勾當官 등으로중앙 정부와 지방정권의 사절들이 입국 진헌하였다.82)

일본 무역선이 고려에 온 것을 명시한 것은 문종 27년(1073) 7월 일본인 王則貞과 松永年 등 42명이 나전・鞍橋・칼・鏡匣・硯箱・櫛・書案・畫屏・향로・弓箭・수은・나갑 등을 바치기를 청하였으며, 壹岐島勾當官도 藤井完國 등 33명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려 하니, 고려에서는 이들이 뱃길로 개경까지올 수 있게 허락한 기록이 처음이다.83) 王則貞은《朝野群載》에 의하면 상인

⁷⁸⁾ 金渭顯、〈女真의 馬貿易考-10世紀~11世紀를 中心으로-〉(《淑大論文集》13, 1982).

⁷⁹⁾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研究》上(東京;吉川弘文館, 1965), 136等. 森克己、〈日・宋・麗交通貿易年表〉(《日宋貿易の研究》,東京;國立書院, 1948).

⁸⁰⁾ 羅鍾宇、〈高麗前期의 麗・日貿易〉(《圓光史學》1, 1981), 41~42쪽. 金庠基、앞의 책, 197쪽.

⁸¹⁾ 姜萬吉, 앞의 글, 215쪽.

⁸²⁾ 李鉉淙、〈高麗와 日本과의 關係〉(《東洋學》7. 檀國大, 1977), 248쪽,

^{83)《}高麗史》 권 9, 世家 9, 문종 27년 7월. 青山公亮,〈日麗通商管見〉(《白鳥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岩波書店, 1925), 118쪽.

이 분명하며, 문종 33년에도 매매차 고려에 왔었다.⁸⁴⁾ 상인의 명칭도 일본상인·일본상객·筑前州商客·太宰府商客 등 다양하였으며,⁸⁵⁾ 특히 九州지방의호족과 무역함으로써 양국의 교역관계가 활발하였다. 문종에서 의종 때까지의 일본인의 입국 횟수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ſ	구분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	합계
	재위 기간	1046~ 1083	1083~ 1083	1083~ 1094	1094~ 1095	1095~ 1105	1105~ 1122	1122~ 1146	1146~ 1170	
	일본	14		6			2		2	24
ſ	<u>*</u>	43		6	5	12	5	4	20	95

〈표 2〉 11세기 후반∼12세기 후반 일본상인 입국 횟수⁸⁶⁾

양국 간의 무역은 11세기 후반 문종 때 가장 빈번하였다. 특히 문종 29년 윤 4월에 상인 大江 등 18명, 6월에 朝元·時經 등 12명, 7월에 상인 59명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러나 송상의 내왕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려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문종 때 문물이 정비되고 송과의 무역이 성행하였으므로, 일본 상인에게도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87) 당시 일본은 장원영주나 博多의 상인들이 스스로 무역선을 만들어적극적인 해외무역을 한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술·항해술이 遺唐使시대보다퇴보한 때였다. 따라서 상선의 해외활동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고려를 무역상대국으로 택하였던 것이다.88) 《朝野群載》에서 "상인이 고려국을 내왕하는 것은 고급의 상례"라고 할 정도였다.89)

⁸⁴⁾ 靑山公亮, 위의 글, 121~122쪽.

三浦圭一은, 王則貞이 宗像氏와 緣戚을 맺은 왕씨 일족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 太宰府에 예속된 贄人집단이 11세기에 동아시아무역의 담당자로 활약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에는 松永法師란 이가 있었는데, 그와 松永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양자의 관련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三浦圭一, 〈10世紀~13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講座日本史》2, 東京大出版會, 1970, 258~262쪽).

⁸⁵⁾ 李鉉淙, 앞의 글, 348쪽.

⁸⁶⁾ 森克己. 〈鎌倉時代の日麗交渉〉(《朝鮮學報》34, 1965), 65쪽 참조.

⁸⁷⁾ 羅鍾宇, 앞의 글, 44~46쪽.

⁸⁸⁾ 森克己, 앞의 글(1965), 64~65쪽.

⁸⁹⁾ 靑山公亮, 앞의 글, 117쪽.

헌종 이후 교역이 부진한 것은 여진 정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 고려 국내사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⁹⁰⁾ 오히려 保原의 난(1156), 平治의 난(1159)과 같은 일본 국내사정에 기인한 것 같다.⁹¹⁾

무역품을 보면 일본에서 고려에 진상한 물품은 수은·유황·진주·법라· 나갑·삼재·해조 등 원료품, 경갑·연상·서안·향로·화병 등 공예품, 도 검·궁전·갑주·보도 등 무기류, 감귤·감자, 소·말, 채단 등이며, 호초· 단목·沈香·서각·소목 등 남방산 물품도 있었다. 진헌품에 대한 고려의 하 사품은 인삼·사향·홍화·호표피·면주·전적·대장경·미곡 등과, 송에서 수입한 약재·견직물·전적 등이었다.92)

대일무역은 시종일관 제한적이고 거절적인 태도로 일관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금주에 객관을 설치하고 진봉선은 1년에 한 번 2척으로 제한하였다.93) 일본인이 고려왕에 대해 토산물을 진헌하고 이에 대해 고려왕이회사하는 進獻下賜 무역이 중심이었으며, 일본 상인들은 이를 통해 이윤 추구에 주력하였다.94)

이러한 진헌하사 무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헌무역,950 太宰府체제에서 조 공 무역 형식을 취한 형태,960 공무역970 등 다소 다른 견해들이 있다. 양국 간의 무역은 왜구의 약탈만행이 심각해지면서 점차 쇠퇴하여 갔다.

(5) 아라비아와의 무역

고려에는 大食國, 즉 아라비아 상인이 송의 고려무역에 힘입어 진출하여 오기도 하였다.98) 대식국인이 고려에 처음 나타난 것은 현종 15년(1024)이다.

⁹⁰⁾ 靑山公亮, 위의 글, 125쪽. 森克己, 앞의 글(1965), 66쪽.

⁹¹⁾ 羅鍾宇, 앞의 글, 46쪽.

⁹²⁾ 李鉉淙, 앞의 글, 251쪽. 羅鍾宇, 위의 글, 49~50쪽.

^{93) 《}高麗史》 권 35, 世家 25, 원종 4년 4월.

⁹⁴⁾ 靑山公亮, 앞의 글, 127쪽.

⁹⁵⁾ 森克己. 〈日・宋と高麗との私獻貿易〉(《朝鮮學報》14, 1959), 551쪽.

⁹⁶⁾ 三浦圭一, 앞의 글, 257쪽.

⁹⁷⁾ 羅鍾宇, 앞의 글, 49쪽.

⁹⁸⁾ 金庠基, 앞의 글(1959), 55~56쪽.

이 해에 悅羅慈 등 10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이듬해 9월에도 夏詵羅慈 등 10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靖宗 6년(1040) 11월에는 客商 保那盍 등이 와서 수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 등을 바치니, 고려에서도 金・帛을 후하게 주었다. 대식국 상인의 내항은 불과 몇 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로써 고려시기의 외국무역이 매우 폭넓고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9)

3) 화폐 및 차대법

(1) 화 폐

가. 동전의 유통

고려시기의 화폐는 대체로 물품화폐와 금속화폐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1000 물품화폐로 사용된 것은 주로 베와 쌀이었다. 그러나 쌀에 비해 베가

姜萬吉, 앞의 글, 217쪽.

朴龍雲, 앞의 책, 242~243쪽.

100) 고려전기 화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秋浦秀雄、〈高麗肅宗朝に於ける鑄錢動機に就て〉上・中・下(《青丘學叢》 $7\cdot 8\cdot 9$, 1932).

田村専之助、〈高麗の貨幣銀瓶の形態及び性質について〉(《浮田和民博士記念 史 學論文集》、六甲書房、1943).

金庠基,〈大覺國師 義天에 대하여〉(《국사상의 제문제》3, 國史編纂委員會, 1959). 金柄夏.〈高麗時代의 貨幣流通〉(《慶熙史學》3, 1972).

―――、〈高麗朝의 金屬貨幣 流通과 ユ 視角〉(《東祥學》5. 1975).

金三守、〈高麗時代의 經濟思想-貨幣・信用・資本 및 利子・利潤 思想->(《淑 大論文集》13, 1973).

奥村周司,〈高麗の貨幣流通について-朝貢との關聯性-〉(《早稻田實業學校研究 紀要》10, 1975).

채태형, 〈10~12세기의 국내상업과 대외무역 및 화폐유통의 발전〉(《력사과학 론문집》13, 1988).

----. (고려시기의 금속화폐에 대하여)(《력사과학》2. 1987).

蔡雄錫, 앞의 글(1988).

金光植,〈高麗 肅宗代의 王權과 寺院勢力-鑄錢政策의 背景을 中心으로ー〉 (《白山學報》36, 1989).

井上正夫, 〈高麗朝の貨幣-中世東アジア通貨圏を背景にして-〉(《靑丘學術論集》2. 한국문화연구진홍재단, 1992).

須川英德, 〈高麗から李朝初期における諸貨幣-錢・銀・楮貨-〉(《歷史評論》516, 1993).

⁹⁹⁾ 金庠基, 앞의 책, 196~197쪽.

좀더 운반이 쉽고 가치의 안정성이 높았으므로, 점차 많이 쓰이게 되었다. 101) 그러므로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서, 가치의 척도로서 가장 널리 사용한 화폐는 布貨였다. 이 때 포화로서 기능한 것은 주로 질이 나쁜 마포인 麤布였다. 물품 자체로서는 사용가치가 없는 추포가 교환수단인 포화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었다. 거래가 소규모이면서도 항상화·등가화되고 있는 교환시장에서 추포는 가장 적합한 화폐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장시와 연관하여스스로의 독자적인 화폐경제도 만들어 내고 있었다. 102) 포화는 뒤에 추포에서 5승포(5종포)로 바뀌었다. 5승포는 품질이 중간 정도 되는 베이지만 이것이 곧 화폐로서 구실하기도 했던 것이다.

고려왕조는 물품화폐 대신에 금속화폐를 사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성종 15년(996)에 처음으로 鐵錢을 주조하며 쓰도록 하였다. 성종 때에 최초로 실시된 화폐유통책은 추포 또는 기타 자연적인 물품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국가권력이 장악하려는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六衛制의 설치나 州縣軍制의 개편 등 군사력 강화에 따른 국가재정 확보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103) 그러나 이 때 주조된 철전은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였다.

화폐유통책을 실시한 지 불과 6년 후인 목종 5년(1002) 7월에는 풍속을 놀라게 하여 국가에 이익이 되지 못하고 백성의 원망을 일으킨다는 시중 韓彦恭의 건의에 따라 茶店・酒店・食味店 등에서만 화폐를 사용하고, 백성들이 사사로이 교역하는 것은 종전대로 베나 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104) 한언공의 화폐유통에 대한 입장은 土風에 입각하여 매우 수구적이었다. 성종 때의 화폐유통책은 그 주도세력이 우리의 여건과 기반을 도외시하고, 중국의 銅鐵錢 유통책에 일방적으로 견인되어 비주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105)

¹⁰¹⁾ 金柄夏, 위의 글(1975), 13~14쪽.

¹⁰²⁾ 李景植, 앞의 글, 51~52쪽.

¹⁰³⁾ 蔡雄錫, 앞의 글(1988), 83~86쪽.

^{104)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목종 5년 7월.

¹⁰⁵⁾ 具山祐,〈高麗 成宗代의 鄕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韓國文 化研究》6, 1993), 139~141쪽. 한편 蔡雄錫, 앞의 글(1988), 87~88쪽에서는 목종 이후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면서도 본관제의 자율적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폐유통정책이 본관제의 습속과 융화되지 못하여 수정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숙종 때에 다시 화폐유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주전사업이 실시되었다. 숙종 2년(1097)에 주전관을 두어 금속화폐의 유통을 장려하였다. 숙종 6년 4월에는 주전도감에서 사람들이 전폐를 사용하는 이점을 알아 편하게 여기니 종묘에 고할 것을 상주하였다.106)

숙종 때의 화폐주조는 생산력의 증대와 교환경제의 발달, 정종·문종 때의 도량형의 정비 등에 의해, 성종·목종대에 물품화폐의 비중으로 인해 실패하 고 말았던 제약조건이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전의 주된 동기의 하나는 국가재정의 확보에 있었다. 당시 거란·여진과의 관계에서 위기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경제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義天의 절대적인 포부 및 경륜과 숙종의 확고한 결의가 결합되어 화폐주조가 이루어졌다.107)

그러나 화폐유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숙종 7년(1102) 12월에야 비로소 해동통보를 주전하고 그 유통책을 마련하게 되어, 이를 太廟八陵에 고하고 錢貨 15,000관을 재추·문무양반·군인에게 나누어 주었다.108) 숙종 2년에 시작된 주전사업은 화폐유통 반대론에 부딪혀 지연되다가 숙종 7년 12월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화폐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개경에 左右 酒務를 설치하였다.109) 그러나 화폐유통이 부진하자 숙종 9년 7월에 관료와 군사에게 官錢을 지급하고 酒食店을 주현에까지 확대 설치하여화폐유통의 보급을 도모하였다.110)

그런데 숙종 9년 7월의 화폐유통책은 南京 建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남경 경영은 지리도참사상을 이용한 숙종의 왕권 강화의 한 방편이었으므로, 주전사업은 남경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숙

^{106)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숙종 2년 12월 · 6년 4월.

¹⁰⁷⁾ 秋浦秀雄, 앞의 글 下, 72~73쪽.

^{108)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숙종 7년 12월.

¹⁰⁹⁾ 위와 같음. 蔡雄錫, 앞의 글(1988), 91쪽.

^{110)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숙종 9년 7월 및 권 12, 世家 12, 숙종 9년 7월 신축.

蔡雄錫, 위의 글(1988), 91쪽. 한편 井上和夫, 앞의 글, 207쪽에서는 설치를 통화에 신용을 부여하기 위한 지불 준비, 즉 최종적으로 술과 교환된다고 안심 시킴으로써 명목 이상의 가치로서 유통에 편입되기를 지향한 것이라고 하였다.

종의 측근이었던 대각국사 의천과 尹瓘이 남경 창설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했던 것이다.¹¹¹⁾

주전정책을 옹호한 세력은 윤관 등 신흥관료와 의천 등 天台宗 계통 사원세력이었다. 따라서 숙종 때의 주전사업은 기득권적인 문벌귀족과 法相宗 계통 사원세력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고 사원세력의 재편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112)

숙종 때는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창설하고 왕권을 강화함에 따라 재정 수요가 증대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官屯田을 설치하고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여 이익을 취할 뿐 아니라, 실질가치가 명목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주화를 제작하여 유통시킴으로써쌀・베와 같은 실질가치를 지닌 재화를 비축할 수 있었다.113)

성종·숙종 때의 화폐정책은 시전과 장시를 매개로 한 상업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하였으며, 화폐의 발달은 동시에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상 승작용을 하였다. 또한 상업발달의 기반 위에서 상품의 운송·유통과정과 관련있는 關稅·津稅와 상업세 징수를 통해 稅收의 확대를 추구하였다.¹¹⁴⁾

고려시기에 유통된 동전은 건원중보·동국통보·동국중보·해동원보·해동원보·해동통보·해동중보·삼한통보·삼한중보 등이다. 이들 동전은 다시 對讀가 回讀, 해서·전서·행서·예서·八分書의 서체, 대형과 소형 등 여러가지 구분이 있어서 약 100여 종이나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주조된 것은 주조의 다원성과 장기간에 걸쳐 주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물품화폐가 보편적인 교환의 척도이며 수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15)

고려시기에는 송의 동전도 유입되어 사용되었던 것 같다. 북송 말기부터 宋 동전의 해외 유출은 점차 증가하였다. 북송 神宗 熙寧 7년(1074, 문종 28) 전화의 해외유출 금지를 해제한 적이 있지만, 대체로 유출금지책으로 일관하였다. 北宋錢이 동아시아 무역에서 商貨로서 널리 유통된 것은 11세기가 최

¹¹¹⁾ 蔡雄錫, 위의 글(1988), 91~92쪽.

¹¹²⁾ 金光植. 앞의 글 141~146쪽.

¹¹³⁾ 安秉佑, 〈高麗의 屯田에 관한 一考察〉(《韓國史論》10, 서울大, 1984), 45쪽.

¹¹⁴⁾ 蔡雄錫, 앞의 글(1988), 97~110쪽.

¹¹⁵⁾ 金柄夏, 앞의 글(1972), 39쪽.

전성기였다. 송전이 유출된 범위는 동으로 일본·고려, 북으로 거란·금, 남으로 南海諸島, 서로 페르시아에서 아프리카 동해안의 마릴랜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¹¹⁶⁾ 송전의 유출이 증가하자, 남송 寧宗 慶元 5년(1199, 신종 2) 7월에는 일본·고려상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¹¹⁷⁾

12세기 무렵에 축조된 충주시 직동 廢古墓群에서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10세기 후반~12세기 초에 주조된 宋錢이 약간 출토되었다.¹¹⁸⁾ 이러한 송전의 유입은 고려의 화폐유통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¹¹⁹⁾

나. 은병화의 유통

숙종 때에는 금속화폐로서 동전 뿐만 아니라 고액화폐인 銀瓶도 주조되었다. 숙종 6년 당시 은이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동을 섞어 盜鑄하는 폐단이 심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정화로서 은병화를 만들었다. 은병은 은 1근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땄기 때문에 속명으로 闊口라고 불렀다. 은병에는 도주의 폐단을 막기 위해 표인을 하였다. 120) 그러나《鷄林遺事》에 의하면 은 12당 반과 동 2당 반을 합주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은병을 法定貨로 삼은 것은 은을 화폐로 공인한 것이므로 12세기 이후 각종 매매, 뇌물, 조세 대납, 물가 표시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은 유통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도주 현상을 야기시켰다.[21] 은병은 고액의 화폐

¹¹⁶⁾ 三浦圭一, 앞의 글, 265~266쪽.

¹¹⁷⁾ 森克己, 앞의 책, 474쪽.

[《]宋史》권 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傳에도, 寧宗 慶元(1195~1200) 연간에 조 칙을 내려 상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고려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하였다.

¹¹⁸⁾ 충주공전박물관・충주시, 《忠州山城 및 直洞古墓群 發掘調査 報告書》(1986).

¹¹⁹⁾ 森克己,《續日宋貿易の研究》(東京;國書刊行會, 1975), 148~149・182~183쪽 에서는 12세기 후반부터 송전이 유입되어 비로소 고려는 화폐경제로 이행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井上正夫는 실제로 고려에서는 송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井上正夫, 앞의 글, 213쪽 재인용).

^{120)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숙종 6년. 田村專之助, 앞의 글, 325~328쪽.

¹²¹⁾ 田炳武, 앞의 글, 104쪽. 須川英德, 앞의 글, 46쪽에서는 은병의 제조 목적이 주로 대송무역의 지불수 단에 있다고 하였다.

였기 때문에 은에 동을 섞어 私鑄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충혜왕 때는 소은병을 만드는 등, 형태가 바뀌었지만 제도만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동전과 은병의 발행과 유통을 중심으로 한 숙종 때의 화폐유통정책에 대해예종 원년(1106)에 중외의 신하가 대부분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한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122)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종 즉위를 전후한 정치적 변동, 숙종의 왕권강화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의천의 죽음, 그에 따른 사원세력의 급격한 추세변동, 윤관 등 신흥세력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숙종 때의 주전정책은 자체 내에 한계성을 지닌 채 변질되어 갔다.123) 고려 전기의 화폐유통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수취체제가 현물과 노동력위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생산자의 화폐를 통한 교환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차별적인 유통구조에 기초한이원적 유통구조가 피지배층의 잉여의 축적과 그에 기반한 유통경제의 발달을 억제함으로써 동전ㆍ철전의 유통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셋째, 所의 존재처럼 부곡제 지역의 설정을 통한 수취체제의 고착성이나 工匠案의 작성을

그러나 동전·철전 유통책이 실패했다고 하여 고려 전기의 경제수준이 자연 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유통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농촌시장에서도 추포가 교환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직접생산자 중심의 유통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125)

통한 수공업자의 국가적 통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본관제의 사회구조가 상 공업을 규정하고 있었다. 본관제의 사회구조는 이 시기 수취 체제나 지배 충·사원의 유통경제의 성격과 함께 농촌시장 등 직접생산자 중심의 유통경

고려왕조의 정책이 화폐경제를 권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현물경제에 치중하

제 발전을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하였다.124)

^{122)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貨幣 예종 원년.

¹²³⁾ 金光植, 앞의 글, 145쪽.

¹²⁴⁾ 이상은 蔡雄錫, 앞의 글, 100~107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¹²⁵⁾ 蔡雄錫, 위의 글, 108쪽.

는 양면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금속화폐의 유통은 부진하였다.126) 국가가 실물 경제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조세와 공부 및 녹봉이 모두 현물이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화폐경제에 관한 한 고려 전기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127)

(2) 차대법

고려시기의 차대관계에128) 따른 법정이자율이 정하여진 것은 경종 5년(980)이다. 公私의 차대에 쌀 15두에 5두, 베 15척에 5척의 이자로 1/3의 이식을 정하였다.129) 그 뒤 성종 원년(982)에는 '子母相侔'라 하여 원금과 이자가 같게 되었을 때는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가 마련되었다.이「子母相侔法」은 문종 원년(1047)에 정해진「子母停息法」과 같은 의미일 것으로 이해된다. 자모정식법은, 1~3년은 1/3, 4년째는 무이자, 5년째는 4/10,6년 째 이후는 이자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130) 경종 때의 규정에 비해이자 부담을 훨씬 줄인 것이다.131) 그러나 이러한 법제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자율이 워낙 고율인데다가 불법적으로 많은 이식을 취하는 고리대가 성행하여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132)

貸錢層으로는 供辦都監・관고・신흥창・양현고 등 국가 자체가 식리를 하는 기관도 있었고, 이러한 공채의 폐단 또한 매우 컸다. 사채로는 최고 권력자인 왕을 비롯하여 왕실・권세가・부호・환관 등 지배층의 식리활동이 성행하였으며, 경주인의 식리활동도 적지 않았다. 차대관계에서 특이한 것은 사원의식리활동이 성행하였다는 점이다. 사원은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 왕실・귀족이기진하는 토지, 일반민이 투탁한 토지 등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사

¹²⁶⁾ 金三守, 앞의 글, 49~50쪽.

¹²⁷⁾ 朴龍雲, 앞의 책, 248쪽.

¹²⁸⁾ 차대법을 개관한 것으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白南雲, 앞의 책.

崔慶洙、〈高麗時代의 貸借種別의 考究〉(《建大學報》12, 1962).

徐吉沫、〈高麗時代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研究〉(《國際大學論文集》9. 1981).

^{129) 《}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借貸.

¹³⁰⁾ 徐吉洙, 앞의 글, 214~215쪽.

¹³¹⁾ 具山祐, 앞의 글, 124쪽.

¹³²⁾ 朴龍雲, 앞의 책, 248쪽.

원의 식리활동은 보·장생고 등 기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었는데, 특히 보가 중요한 식리 기구였다.[33]

寶는 전곡을 시납하여 그 본전은 보존하고 이식을 취해 영원히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방언으로서, 134) 일정한 자금을 밑천으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를 가지고 불사나 공공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재단이다. 보에는 광학보·금종보·학보·제위보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崔承老의 시무책에서 여러 사원의 승려들이 주군에 사람을 파견하여 불보의 전곡을 관리하게 하고 매년 식리함으로써 백성을 괴롭히므로 불보 전곡은 오직 사원의 莊舍에 한하도록 하라고 한 것처럼,135) 보는 원래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사원 고리대의 주대상은 사원예속민 즉 隨院僧徒로 표현된 예속농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원전의 경작민에게 한정되지 않고 일반 군현민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이는 용문사중수기에 축성보의 명목으로 마련된 700석을 촌민에게 나누어 빌려 주고 그 이식을 취하여 도량의 비용으로 삼았다는 데서도 확인된다.136)

고려 후기로 갈수록 식리는 더욱 가혹해져서 공채나 부호의 사채의 경우 文契를 조작하거나 단리가 아닌 복리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¹³⁷⁾ 이러한 현상은 사원보의 식리에도 마찬가지였다. 무신난 후 수선사의 慧諶은 倍長 혹은 半長의 이익을 취하므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서 가혹한 식리행위를 비판하고 國式 즉 법정이자율에 따라 그 이식을 낮출 것 을 주장하였다.¹³⁸⁾

사원은 개인이나 국왕이 시납하는 布·穀을 본으로 하여 고리대를 행하였다. 개인이 사찰에 물품을 시납할 때는 고리대 행위 즉 '存本取息'을 전제로 하였으며, 고리대의 규모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명종 때 용문사·용암사·용수사는 각각 7백, 2천, 1천 석의 곡식을 이식하였으며, 고종 때 수선사는 1만

¹³³⁾ 徐吉洙, 앞의 글, 262~263쪽.

^{134) 《}高麗史節要》권 1, 태조 13년 12월.

^{135)《}高麗史》 권 93. 列傳 6. 崔承老.

¹³⁶⁾ 韓基汶、〈高麗時代 寺院寶의 設置의 運營〉(《歷史教育論集》13・14 1990), 381쪽.

¹³⁷⁾ 徐吉沫, 앞의 글, 216~219쪽.

¹³⁸⁾ 韓基汶, 앞의 글, 382쪽.

1백 석으로 이식행위를 하였다. 당시 이자율이 1/3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한 양의 잉여물을 고리대로 수탈당하였다. 고리대를 관리하는 자는 사원의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각 지방에 문도를 직접 보내거나 또는 말사를 통해 관리하기도 하였다. 고리대의 주대상은 농민이었다. 사원과 농민과의 관계는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리대는 불평등한 관계에서행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원의 차대 행위는 고율일 뿐만 아니라 강제성을 떤 것이었다. 필요하지도 않은 쌀이나 베 등을 민에게 강제로 빌려주는 행위가 널리 성행하였다. 즉 反同은 일종의 강제고리대였다. 그러므로 사원의 고리대는 농지경영이나 상업과 하나가 되어 농민의 잉여를 수탈하였다. 농지경영을 통한 지대・지세의 수취가 일차적인 것이라면, 상업・고리대를 통한 수취는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었다.이들 세 가지 것은 별개로 농민을 수탈하는 것이었다.139)

한편 백성들에 대한 진휼기관으로 설치된 義倉도 고리대 기능을 하였다. 원래 의창곡은 이식없이 빈민에게 분급하고 가을에는 그 원본만 환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종 때에 썩은 관곡을 빈민에게 장제로 지급하여 그 이식 을 취하였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점차 이식을 전제로 한 공적 고리대 로 전환되어 갔다.140) 의창곡이 일종의 부가세로 징수되어 국가재정수입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고리대로 전환하였던 것이다.141)

〈金東哲〉

¹³⁹⁾ 이상은 李炳熙, 앞의 글, 110~119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¹⁴⁰⁾ 朴鍾進,〈高麗前期 義倉制度의 構造와 性格〉(《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434~436\.

¹⁴¹⁾ 白南雲, 앞의 책, 572~573쪽.

찾 아 보 기

[¬]

가구소 街衢所 446 가급전 加給田 222, 226, 275 가내수공업 家內手工業 16,436 《가락국기》 《駕洛國記》 299,300,303, 304 가전 家田 83,144,146 가주남둔전 嘉州南屯田 148, 150, 197 검교직 檢校職 57, 386 가주둔전 嘉州屯田 196 가호둔전 家戶屯田 201,202 가흥창 嘉興倉 406 각장 権場 16, 458 간간 間竿 306 간장사 看藏寺 147, 160, 253, 254, 260 간종법 間種法 321 감문위 監門衛 89, 227, 247 감창사 監倉使 374 갑방 甲坊 15,419,421 갑인양전 甲寅量田 369 강감찬 姜邯贊 146, 157, 160, 280, 281 강거정 姜居正 255 강매 强賣 450 강시 强市 450 강여 强與 450 강창 江倉 404 442, 446, 447 개경 開京 개경시전 開京市廛 16 개령현 開寧縣 146, 157, 160 개선사석등기 開仙寺石燈記 22,159, 281, 301, 303, 309, 327 개정전시과 改定田柴科 3,35,43~61, 계량법 計量法 10 96, 101, 216, 240, 241

객관 客館 460 객상 客商 463 갱정전시과 更定田柴科 3,35,49,52, $54 \sim 56, 59 \sim 63, 69, 85, 93, 96, 107, 110,$ 125, 174, 210, 216, 234, 235, 239 건답법 乾畓法 327 건동선사 乾洞禪寺 254, 260 건원중보 乾元重寶 466 검교관록 檢校官祿 5,132 견훤 甄萱 24~26, 28, 33, 271, 272 결부법 結負法 314 결부(제) 結負(制) 10,297~300,302~ 304, 307, 309, 311, 312, 315, 316 격직제 兼職制 108.109 경군 京軍 7,81,82,101,240 경군영업전 京軍永業田 82,207,208 경무법 頃畝法 298, 299, 314, 315 경시 京市 445 경시사 京市司 444,446 경시서 京市署 16, 446 경양현 慶陽縣 412 경역 京役 64,65 경외양반군인가전영업전 京外兩班軍人 家田永業田 247 경외잡직 京外雜職 234 경작권 耕作權 134, 277, 278 경조 京租 22,159,327 경종전시과 景宗田柴科 331 경창원 景昌院 15, 137, 178, 250, 254, $373, 374, 402, 405 \sim 407, 409$ 계권 契券 80,86,211 《계림유사》 《鷄林遣事》 467

계유정난 癸酉靖難 271 계전법 計田法 371 계정법 計丁法 371 고공 雇工 338 고구려 세제 高句麗 稅制 299 《고려도경》《高麗圖經》 3, 16, 188, 296, 314, 324, 406, 443, 444, 448 고려세목대조표 高麗稅目對照表 358 고려식목형지안 高麗式目形止案 434 고리대 高利貸 17, 471 고증은권 高曾文券 86, 211 고휴경법 高畦耕法 323 공노비 公奴婢 205, 264 공랑세 公廊稅 444 공무역 公貿易 462 공물 貢物 $354, 355, 357, 360 \sim 362, 366,$ 370~374, 383, 398, 447 공변도감 供辨都監 469 공복제 公服制 37, 42, 43 공부 貢賦 $1, 11 \sim 14, 31, 221, 232, 350,$ 354, 355, 357, 359, 365, 366, 368, 369, 371 ~ 373, 393, 469 공빙 公憑 456 공서 公書 22, 159 공세 貢稅 337, 341 공수시지 公須柴地 186, 367 공수전 公須田 131, 148, 185, 190, 194, 233, 337, 422 공수조 公須租 131, 191, 199 공신전 功臣田 $33,218,220 \sim 222,335,$ 336 공안 貢案 13, 371, 372 공역 貢役 361, 364, 378, 381 ~ 383, 385 공역군 工役軍 440 공유지 公有地 22, 136, 139, 141, 283, 284, 337 공음전시법 功蔭田柴法 8, 35, 135, 215~219, 220~223, 279 공장 工匠 $15,65\sim68,111,419,424,$ $426 \sim 428, 435, 439$

공장별사 工匠別賜 114,125,422,426~ 428 공장안 工匠案 15,426,468 공전 公田 1, 5, 6, 9, 12, 23, 71, 78, 81, 85, 133~140, 143, 145, 147, 152, 153, 155, 163, 164, 170, 171, 173, 175, 188, 202, 209, $230, 249, 277, 279, 301, 335, 337, 341 \sim 343,$ $345 \sim 347$ 공전제 公田制 8, 9, 133, 134, 276, 277, 279 공전조 公田租 73, 74, 154, 338, 340, 341, 343, 351, 352 공조서 供造署 15, 419 공포 貢布 357, 374 공해전 公廨田 1, 6, 22, 131, 141, 142, 148, 150, 182, 183, 185~189, 191, 192, 200, 204, 205, 283, 284, 335~337, 367, 422 62, 182 공해전시 公廨田柴 공해전조 公廨田租 337 과거 科擧 36, 38, 39, 114, 225 과등 科等 58, 61, 110 과세대장 課稅臺帳 과역 課役 376, 378, 383 과전 科田 $70, 71, 74 \sim 77, 79 \sim 81, 83,$ 88, 90, 92, 96, 134, 230 과전법 科田法 23, 71, 76, 88, 91, 95, 96, 105, 134, 138, 141, 142, 163, 164, 213, 222, 229, 231, 237, 239, 268, 335 과호 課戶 25 곽소 藿所 430 관 館 187 관둔전 官屯田 6, 142, 150, 199, 200, 466 관료전 官僚田 97, 302 관모전・답 官謨田・畓 22, 145, 188, 191 관사전 官司田 225 관선조운체제 官船漕運體制 414 관세 關稅 466 관속공장 官屬工匠 68 관수관급 官收官給 75,86~88,211, 267

관시 關市 446 관영상점 官營商店 446, 447 관인영업전 官人永業田 215 관장 官庄 148 관청공해전 官廳公廨田 $188 \sim 192$ 관청수공업 官廳手工業 426 관품 官品 $50 \sim 52, 58, 61$ 광학보 廣學寶 470 광흥창 廣興倉 129, 131, 173, 174, 273, 352, 409 교환경제 交換經濟 465 9등호제 九等戶制 389 구분전 口分田 6,8,81,83~85,89,91, 92, 95, 105, 209, 210, 213, 225~230, 237 구비법 廐肥法 329 구정제 丘井制 295 국가비보소 國家裨補所 267 국가수조지 國家收租地 71, 83, 85, $207 \sim 210, 279, 351$ 국・공유지 國・公有地 170,171,188, 198, 199, 204, 205, 342~345, 347 국둔전 國屯田 192 국유제 國有制 133, 134, 136 군기감 軍器監 49, 68, 419, 422, 424, 427 군기시 軍器寺 15, 419 군둔전 軍屯田 142, 149, 150, 192, 193, 196, 199, 203, 241 군반씨족 軍班氏族 244 군반제 軍班制 244 군수전 軍須田 358 군역 軍役 7, 9, 53, 77, 227, 238, 243, 245 군인구분전 軍人口分田 83, 84, 225, 226 군인영업전 軍人永業田 74 군인전 軍人田 1, 3, 7, 10, 23, 70~72, 74, 77, 78, 81, 82, 88, 92, 94, 129, 141, 144, $154, 163, 186, 190, 207 \sim 209, 211 \sim 213,$ 224, 226, 227, 237, 240~243, 245, 246, 250, 251, 295 군인전시과 軍人田柴科 241

군인호정 軍人戶丁 6,74,140~142, 144, 237, 238 군전 軍田 178 군현제 郡縣制 143, 176, 355, 357, 365, 382, 388, 403, 411 군호 軍戶 243, 245 궁둔전 宮屯田 192 궁사전 宮司田 83, 231, 335, 336 궁예 弓裔 153, 158, 169 궁원공해전 宮院公廨田 187, 189, 248 궁원전 宮院田 6, 7, 13, 70, 71, 73, 74, 140, 144, 150, 181, 189, 208, 209, 244, 24 $8 \sim 251, 284, 338$ **궁원・조가전** 宮院・朝家田 190 권무관록 權務官祿 103, 104, 111, 11 $4 \sim 117$ 권무직 權務職 115, 116 귀화소 歸化所 430 균전제 均田制 1, 9, 10, 291~294, 296 균전제설 均田制說 289, 290, 292, 295 근경법 根耕法 321 금기방 錦綺坊 15, 419, 421 금물촌처 今勿村處 176 **금**소 金所 15, 383, 430~432, 438 금속화폐 金屬貨幣 17,457,463~465, 469 금유 今有 14, 400 기관층 記官層 237, 238 기사양전 己巳量田 368, 369 기양현 基陽縣 119 237, 238, 367 기인선상 其人選上 기인전 其人田 141, 208, 209, 237, 250 기인호정 其人戶丁 $6,74,140\sim142,$ 144, 237 기전 畿田 130,132 기준척 基準尺 10, 298, 305, 313 기진전권 寄進田券 281 김광중 金光中 149, 194, 196 김부 金傅 24~26, 32, 33, 271, 272

[L]

나지휴한법 裸地休閑法 319 난행량 難行梁 410 남반직 南班職 52, 54 남북항로 南北航路 455 남선항로 南線航路 455 납포수염 納布受鹽 396 내고 內庫 395 내궁전고 內弓箭庫 419 내부시 內府寺 15, 419 내장전 內莊(庄)田 1, 6, 14, 142, 146, 148, 150, 172, 175, 179~182, 191, 205, 351 내장택 內莊宅 6, 129, 177, 178, 188 노비결송법 奴婢決訟法 268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35 녹과(전) 祿科(田) 56, 110, 130, 184, 229, 230 녹봉 祿俸 5, 6, 55, 65, 81, 82, 89, 98, 105, 108, 112, 117, 118, 121, 123~130, 132, 133, 171~174, 207, 282, 350, 352, 358, 469 녹봉제 祿俸制 1,97~101,103,106,127. 132, 427 녹비법 綠肥法 328, 329 녹위여전 祿位餘田 129, 131 녹읍 祿邑 2, 24, 27~34, 73, 96, 98, 176 녹전 祿轉 26, 129, 130, 173, 252, 272, 361 녹전미 祿轉米 131 녹절계법 祿折計法 128 녹패 祿牌 103, 128 323 《농사직설》 《農事直說》 $321 \sim 323$ 《농상집요》 《農桑輯要》 319 《농서집요》 《農書輯要》 319 농장 農莊 162, 200, 339 능라점 綾羅店 446 능침전 陵寢田 335, 336

[=]

다점 茶店 447, 464 다주전매제 茶酒專賣制 단병서 短柄鋤 325, 327, 328 단서철권 丹書鐵券 32 단정 單丁 14 단주 湍州 146, 157, 159, 166 답분법 踏糞法 329 당대등 堂大等 187 당・송대 세제 唐・宋代 稅制 364 대간 臺諫 61 대강 大江 461 대관 臺官 60 대광현 大光顯 32, 274 대덕 大德 69 대등 大等 187 대마도사 對馬島使 460 대상 大相 29 대시사 大市司 445, 446 대식국 大食國 17, 454, 462, 463 대안사 大安寺 257, 439 대약국 大藥局 446 대운사 大雲寺 254, 439 대일무역 對日貿易 454, 462 대장 大匠 65 대창 大倉 128, 129, 131 대창니고상량문 大倉泥庫上梁文 169 대통 大通 69 대하전 代下田 308 덕방원 德方院 덕종전시과 德宗田柴科 223 덕진명소 德津溟所 430 덕흥창 德興倉 406, 407 도관 都官 426 도교서 都校署 419, 424, 427 도단련사 都團練使 45 도당 都堂 273 도량형 度量衡 311, 415, 454, 465

《도선밀기》 《道詵密記》 267, 268 마진 摩震 38,64 도선사 道仙寺 160 만령전 萬齡殿 178, 254, 255 도염서 都染署 420 매매원 買賣院 458 매전권 賣田券 도염원 都鹽院 395 281 도전장 都田帳 162 면역 免役 387 면조권 免租權 도중 道衆 261 $3,72,74\sim76,79,82,207$ 도참사상 圖讖思想 379 면조설 免租說 75~82 도첩제 度牒制 265 면조지 免租地 206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198, 225 명전 名田 77, 78, 81, 144, 243 도항경 都航卿 37,38 모미 耗米 408,409 도행 導行 308 모산진농장 母山津農場 195,196 도호부사 都護府使 45 목인길 睦仁吉 204 돌백사 埃白寺 301 목종전시과 穆宗田柴科 223,331 동경관록 東京官祿 101,102,119 묘련사 妙蓮寺 261 무반록 武班祿 동국중보 東國重寶 466 112 동국통보 東國通寶 466 무반섭직 武班攝職 114 동궁관록 東宮官祿 4,103,110,111, 무반섭직록과 武班攝職祿科 112 113, 114, 116 무벽려 無鐴犁 $322 \sim 324$ 동로둔전사 東路屯田司 194, 198 무벽무상려 無辭無床犁 323 동서적전 東西籍田 무산계 武散階 205 $15,63\sim68,125,126,$ 동서학당 東西學堂 204 234, 235, 237, 239, 426 동소 銅所 15,430,431,438 무산계전시 武散階田柴 3, 35, 62, 63, 동시 東市 443 $66 \sim 69,93$ 동월 董越 무직잡승 無職雜僧 261 314 묵소 墨所 430,431 동전의 유통 銅錢의 流通 463,468 동정직 同正職 57,113~115,223,225, 문계 文契 86, 146, 160, 211, 470 226, 238 문권 文券 80,211 두락제 斗落制 298 문무관록 文武官祿 113 두락지 斗落只 298 문무관료전 文武官僚田 302 둔전 屯田 6, 22, 192~199, 203, 283, 문무반록 文武班祿 4,55,98,102~ 346, 347 $104, 106 \sim 108, 110, 111, 114$ 등과전 登科田 222, 226, 275 문무양반전 文武兩班田 74,209 문반록제 文班祿制 113 등원조신 뇌충 藤原朝臣 賴忠 460 등호제 等戶制 370,371 문반시직 文班試職 114 문반직 文班職 54 $[\Box]$ 문산계 文散階 36, 38, 50, 64 문정 文正 269,270 문종록제 文宗祿制 104, 106, 109, 112~ 마군 馬軍 48, 58, 240, 241 마산창 馬山倉 409 114, 116 마전 馬田 145, 188, 191 문종외관록 文宗外官祿 117, 123, 124

물품화폐 物品貨幣 $17,463 \sim 466$ 미원장 迷元(原)莊 176, 177 미원현 迷原縣 176 미초율현 未草栗峴 452 민간교역 民間交易 450, 455 민간수공업 民間手工業 15, 425, 429, $435 \sim 438,440$ 민유지 民有地 $1.3 \sim 7.9.21 \sim 23.71 \sim$ $73, 76, 78 \sim 82, 129, 130, 133, 135, 140 \sim 143,$ $146, 150, 153, 155 \sim 162, 164 \sim 166, 171 \sim$ 174, 188, 192, 196, 199, 205~209, 243, 262, 279~284, 290, 335, 341, 343, 352, 353 민전조 民田租 154, 338, 340, 348, 349 민전조율 民田租率 130 밀무역 密貿易 456, 458

[日]

박매(관매) 博買(官買) 456 박수경 朴守卿 34 박영규 朴英規 32 박전 朴琠 146, 157 박정유 朴挺蕤 147 반동 反同 450 반록법 頒祿(法) 127, 128 반정 半丁 213, 220, 238, 367 방납 防納 450 방문 坊門 444 방삼십삼보위일결 方三十三步爲一結 $308 \sim 310, 312, 313$ 방시(제) 坊市(制) 443, 444 방어군 防禦郡 188 방어(부)사 防禦(副)使 45, 123, 124 방어주(사) 防禦洲(使) 123,124 방어진 防禦鎭 124 방제 坊制 444 배극렴 裵克廉 271 배현경 裵玄慶 25 백문보 白文寶 154, 155, 336, 341, 409 백정(농민) 白丁(農民) 10, 150, 151,

157, 165~167, 177, 192, 280, 338, 355 번경 飜耕 325 《범승지서》 《氾勝之書》 323 법계 法階 69 법상종 法相宗 466 법조사 法曹司 183 벽란도 碧瀾渡 16, 454 벽진군 碧珍郡 28 변정도감 辨正都監 224 별공 別貢 13, 357, 398, 430, 432 별무반 別武班 466 별사(과) 別賜(科) 3, 125, 133 별사전 別賜田 222, 226, 275 별사전시 別賜田柴 35, 62, $68 \sim 70$ 별정전시(과) 別定田柴(科) 3, 35, 62, 93 별초 別抄 384 병농일치 兵農一致 248 병량도감 兵糧都監 224 병작반수 並作半收 168, 340 보 寶 17, 259, 470 보검성 寶劍成 보군 步軍 48, 53, 58, 240, 241 보급전 補給田 222, 226, 275 보부상 褓負商 450, 452 보승 保勝 247, 439 보원의 난 保原의 亂 462 보주 保州 458 보주 甫州 119 복두점 幞頭店 446 복장한 卜章漢 87.93 복주 福州 174, 272, 273 복지겸 卜智謙 32 복호 復戶 387 본관제 本貫制 468 봉거서 奉車署 15, 419, 421 봉건적 토지사유제 封建的 土地私有制 134

봉건제도 封建制度

봉군록과 封君祿科

24

132

봉록 俸祿 291 봉사 10조 封事 10條 137, 139 봉선고 奉先庫 444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鳳巖寺智證大 138, 288, 301 師(寂照塔)碑 봉작제 封爵制 271 봉조청록과 奉朝請祿科 127 봉창록 封倉祿 128 봉호 封戶 25 부 賦 378 부곡(민) 部曲(民) 159, 176, 184, 362, $364 \sim 366, 385, 412, 429, 432$ 부곡제 部曲制 355, 365, 382 부모전 父母田 144, 146 부병 府兵 2, 9, 34, 224, 244 부병제 府兵制 48, 244 부세 賦稅 26, 363 부역 賦役 376, 377, 383 부역경비 赴役經費 391 부역의 용례 賦役의 用例 95 부용창 富用倉 353 부원현 富原縣 176 부조전 父祖田 144, 146, 160, 281 북선항로 北線航路 455 북송의 화폐정책 北宋의 貨幣政策 457 분급수조지 分給收租地 $73,80 \sim 83,$ 85, 90, 92, 211, 214, 280 분급토지 分給土地 분반수익(권) 分半收益(權) 75, 76 분반수취 分半收取 151, 168, 171, 339, 340 분전법 糞田法 328 분종법 糞種法 328 불역산전 不易山田 11 불역지 不易地 11 비관속공장 非官屬工匠 68 비보사원 裨補寺院 256, 263, 267, 268 비보지적 裨補之籍 268 비주록 妃主禄 4,11,103~105

[시]

사가재 四可齋 157, 167 사고 四庫 130, 351 사농경 司農卿 330 사무역 私貿易 16, 459 1/4조율 四分之一租率 사소 絲所 366, 430, 431, 438 사원경제 寺院經濟 252, 264, 440 사원고리대 寺院高利貸 470, 471 사원노비 寺院奴婢 250, 268 사원수공업 寺院手工業 16, 440 사원전 寺院田 6, 70, 71, 73, 140, 144, 147, 150, 208, 249, 351, 252, 258~260, 268, 284, 338 사위동토 寺位同土 308 사유지 私有地 4, 5, 22, 23, 30, 73, 75, 76, 80, 81, 90, 133, 139, 141, 143, 146, 156, 158, 161, 162, 170, 335, 337, 343 사자갑사 獅子岬寺 259 사재감 司室監 397 사적 토지소유 私的 土地所有 9, 136, 278 사전 私田 1, 5, 9, 11, 12, 71, 85, 94, $133 \sim 140, 143, 145 \sim 147, 152, 162, 164, 171,$ 202, 206, 209, 212, 229, 249, 275, 277, 279~ 335, 337, 346, 352, 353 사전개혁 私田改革 134 사전개혁론자 私田改革論者 86, 95 사전조 私田租 73, 74, 154, 156 사전조율 私田租率 153 사창 司倉 305 사패전 賜牌田 221, 262, 263 사행무역 使行貿易 16, 458 사헌무역 賜獻貿易 462 《산법지방대성》《算法地方大成》 306 산세 山稅 14, 393, 397, 398 산승 山僧 261 산전 山田 11.318

산직 散職 47, 54, 55, 96 선상 船商 450, 452, 453 3과공전 三科公田 6,7,71,140~143, 선세 船稅 14,392,393,396~398 189, 208, 209, 251, 342 선원사 禪源社 261 삼사 三司 48, 49 선휘제사사 宣徽諸使使 삼세 三稅 $1, 14, 336, 354 \sim 361, 365,$ 섭직 攝職 $111 \sim 114, 116$ 366, 377, 393 성수공업 成手工業 429 삼세대공 三稅大貢 360 세규(달)사 世逵(達)寺 삼세지전 三稅之田 358, 359 세업전 世業田 144, 146, 281 삼일포매향비 三日浦埋香碑 146, 157, 세역 稅役 11, 335, 399 세역법 歲易法 281 318 3품군 三品軍 439 세위전 稅位田 237 삼한중보 三韓重寶 466 세조 稅和 354 삼한통보 三韓通寶 세종20년록제 世宗二十年祿制 466 116 상경농법 常耕農法 11,389 세포 稅布 26, 361 상경설 常耕說 78 소 所 13, 15, 176, 356, 357, 362, 364~ 상공 常貢 13, 357, 430, 432 366, 383, 430, 432, 468 상세 商稅 소경요역 所耕徭役 362 14, 393, 398, 447, 453 상승국 尙乘局 421, 425, 427 소금전매제 鹽專賣制 395, 396 상요 常徭 337, 348, 354, 355, 357~ 소리 所吏 432, 435 360, 363~366, 370, 396 소민 所民 $432 \sim 434$ 상원사 上院寺 253, 260 소수공업 所手工業 15,429,431,434 상의국 尙衣局 419, 427 소유권 所有權 1,5,7,22~24,29,30, 상평의창법 常平義倉法 33, 79 소작제 小作制 72,75,76,150~152 상평창 常平倉 395 상품화폐경제 商品貨幣經濟 소정 所丁 434,440 457 색원 色員 솔거노비 率居奴婢 346 387 색전 色典 15, 405, 408 송광사 고려문서 松廣寺高麗文書 332 서경관록 西京官祿 4,103~105,111, 송상 宋商 16,455,456,461 113, 114, 116, 117, 128 송전 宋錢 467 서경권무관록 西京權務官祿 수경가 輸京價 14,402,405,408 서리전 胥吏田 74,82,208 수도작법 水稻作法 318,320 서적위전 書籍位田 183 수등이척제 隨等異尺制 10.298.310~ 서희 徐熙 100, 126, 458 312 석두창 石頭倉 수령궁 壽寧宮 361 406, 409 석락지 石落只 수선사 修禪社 257, 259, 470 298 석방사 石方寺 258, 262 **수** 水手 405, 408, 414 선공감 繕工監 수신전 守信田 397 96, 219 수암사 水嵓寺 선공시 繕工寺 419 253, 254 선군급전 選軍給田 94,246 수역 輸役 378, 381, 382 선군별감 選軍別監 246 수원승도 隨院僧徒 261,470

수전 水田 335, 341, 344~347 수전농법 水田農法 320,329 수조권 收租權 1,4~7,22~24,30,71, 72, 74, 75, 77, 78, 80, 88, 131, 133, 134, 137, 139, 143, 163, 164, 206, 226, 243, 263, 277, 278, 335, 426~428 수조권분급설 收租權分給說 73, 77, 81.83 수조물품 收租物品 349 수조율 收租率 11, 71, 73, 74, 152, 154~ 156, 170, 171, 182, 192, 198, 314, 340, 341, 343 수조지 收租地 30, 31, 33, 37, 74, 81, 91, 92, 96, 142, 172, 188, 205~207, 212~ 214, 220, 224, 347, 367 수취체제 收取體制 355, 365, 457 숭복사비 崇福寺碑 21, 136, 138, 159, 288, 301 시박사 市舶司 456 시비기술 施肥技術 329 시전 市廛 $16.442 \sim 444.447$ 시정 侍丁 시정전시과 始定田柴科 2,24,34~37. $39 \sim 45, 47, 48, 50, 53, 59, 96, 100, 241$ 시지 柴地 61, 301, 303 시직 試職 $111 \sim 114, 116$ 시탄공 柴炭貢 360, 385 식목도감 式目都監 183, 221 식실봉 食實封 $269 \sim 272$ 식읍 食邑 $2, 24 \sim 27, 32, 105, 142, 144,$ $269 \sim 274$ 신돈 辛旽 266 신라장적 新羅帳籍 188, 279 신라촌락문서 新羅村落文書 22, 301, 303, 315 신상 申商 211 신숭겸 申崇謙 32, 33 신흥창 新興倉 469 십일조법 什一租法 11, 153~155, 169~ 171, 336, 340~344

[0]

아라비아상인 아라비아商人 17, 462 아록전 衙祿田 185 안국사 安國寺 395 안락사 安樂寺 22, 160 안란창 安瀾倉 14.407 안서도둔전 安西道屯田 196 안일호장 安逸戶長 232 안화사 安化寺 256 약목군 若木郡 36 약점 藥店 446 양반공음전시 兩班功蔭田柴 62, 144, 215, 216, 219, 250 양반과전 兩班科田 1, 3, 4, 23, 70, 71, 163, 206, 209, 222, 268, 275, 284 양반구분전 兩班口分田 8, 92, 209, 213, 214, 225, 226, 229~231 양반영업전 兩班永業田 279 양반전 兩班田 $6,70\sim73,82,85,90,$ 91, 94, 140, 142, 144, 154, 157, 174, 206~ 214, 224, 226, 249, 251 양반전시과 兩班田柴科 35, 55, 62, 214, 241 양반조업전 兩班祖業田 230 양안 量案 21, 22, 86, 135, 162, 163, 254, 281, 368 양전 量田 22, 36, 162, 163, 290, 293, 297, 298, 302, 307, 316, 388 양전도장 量田都帳 양전사 量田使 172, 304, 308 양전식 量田式 $305,308 \sim 310,312$ 양전장적 量田帳籍 162 양전제 量田制 311, 314 양전칙 量田尺 10, 306, 310~313 양제 量制 311 양현고 養賢庫 204, 205, 469 양호 養戶 72, 181, 190, 211, 244, 245,

249, 250

외거노비 外居奴婢 151, 181, 338, 351, 어곡소 於谷所 430 어량세 魚梁稅 14,392,393,397,398 387 어량소 魚梁所 15, 398, 430 외관록 外官祿 14,102~104,111,117~ 어분전 御分田 83, 225, 231 120, 128, 130, 131, 199 외역전 外役田 176, 178, 231, 233, 237 여경법 犁耕法 322 여극인 呂克諲 160, 172 요 徭 376,378 여금성 麗金成 429 요공 徭貢 36,360~362 역 役 348, 362, 376, 378, 388, 405 요물고 料物庫 175, 177, 178, 256, 267 역군 役軍 241 요역 徭役 1, 11, 13, 14, 256, 354, 355, 역민식 役民式 $361, 362, 375, 376, 378, 382, 383, 385, 388 \sim$ 390 역분전 役分田 2, 31, 33, 34, 44, 98~ 391 100, 240 용 庸 9,361,363,364 역역 力役 1, 11, 31, 186, 370, 376, 378 용문사중수기 龍門寺重修記 역전 驛田 231 용문창 龍門倉 173, 192, 353 역정호 驛丁戶 384,385 용보원 龍寶院 253 연립토전 連立土田 224 용산처 龍山處 176 연산매곡 燕山昧谷 용수사 龍壽寺 28, 29 257, 470 322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22,146, 우려경 牛犁耕 우창 右倉 130, 173, 350~353, 407, 158, 280, 301 연작법 連作法 11,329 409 염가 鹽價 395~397 운암사 雲巖寺 261 396 염간 鹽干 웅진명소 熊津溟所 430 염분 鹽盆 301, 303 원 院 451 염세 鹽稅 원관 院館 415 $14,392 \sim 398$ 원성왕 元聖王 21, 135, 159, 163 염소 鹽所 394, 430, 438 역양선사 艷陽禪寺 253, 260 원시부족공산제 原始部族共産制 염점 鹽店 446 원정공물 元定貢物 염호 鹽戶 394, 395 월봉 月奉 128 영업전 永業田 4,9,75,81~83,91,95, 위전 位田 237 101, 135, 209, 212, 236, 237, 246, 247 유벽려 有鐴犁 323~325 유벽유상려 有鐴有床犁 323,324 예산진 禮山鎭 28,30 유비창관 有備倉官 255 예식 例食 $98 \sim 100$ 5부방리제 五部坊里制 442,443 유외잡직 流外雜職 47, 48, 53, 58, 60 와소 瓦所 15,430,431 유점도감 楡岾都監 255 완제 琬制 314,315 유점사 楡岾寺 255 왕륜사 王輪寺 258, 262 육상 陸商 450~453 왕위전 王位田 304 육십현 六十峴 452 왕토사상 王土思想 8,9,22,138,152, 육연 六然 441 $163, 169, 276, 287 \sim 289, 335, 348$ 육운 陸運 415, 416 왜구 倭寇 412~416, 462 육위제 六衛制 464

윤관 尹瓘 269, 270, 466 윤답법 輪畓法 319 윤작농법 輪作農法 321 윤작체계 輪作體系 320 율지 栗地 303 은병 銀瓶 17, 448, 449, 467, 468 15, 430, 431, 433, 438 은소 銀所 은호 銀戶 433 을유년대창니고상량문 乙酉年大倉泥庫 上梁文 153 음서 蔭敍 114, 132, 215, 217, 225 음죽둔전 陰竹屯田 195.203 음직 蔭職 223, 387 읍리전 邑吏田 237 의안 義安 44, 431 의창 義倉 140, 209, 471 의창미 義倉米 71,74,140~142,144, 208 의창미수조규정 義倉米收租規定 71, 73, 208, 209 의창조 義倉租 237 의천 義天 465 2과공전 二科公田 6,140~142,188, 196, 200, 204, 208, 249, 251, 342 이규보 李奎報 153, 155, 157, 167, 169, 171, 280, 324, 344 이득분 李得芬 204 이리간 伊里干 161 이민지록 吏民地祿 129 이보림 李寶林 149, 199 이색 李穡 264, 265 이선제 李先齊 434 이성계 李成桂 271, 410, 416 이승휴 李承休 146, 147, 157, 160, 280, 322 이영 李永 74,208,236 이자겸 李資謙 147,462 이제현 李齊賢 27, 153, 155, 169, 171, 174, 273, 344 이지은소 梨旨銀所 433

이총언 李悤言 28, 29, 31 2품군 二品軍 439 인리위전 人吏位田 185, 239 인물추변도감 人物推辨都監 268 인숭록패 人勝祿牌 인정 人丁 13 인정설 人丁說 367 인종갱정록제 仁宗更定祿制 $103 \sim 106$. 109, 112, 113 인종갱정외관록 仁宗更定外官祿 119, $120, 122 \sim 124$ 1결의 실적 一結의 實積 316 일경 日耕 298 1과공전 一科公田 6,7,140~143,179, 180, 182, 342 일기도구당관 壹岐島勾當官 460 일본상객 日本商客 461 일역지 一易地 11 1품군 一品軍 248, 439, 440 임춘 林椿 32, 146, 157, 159, 166, 281 임피둔전 臨坡(陂)屯田 198, 200~202 입공무역 入貢貿易 455 입구세 入口稅 456 입진전 入鎭田 222, 226, 275

[ㅈ]

자모상모법 子母相侔法 469 자모정식법 子母停息法 469 작물교대설 作物交代說 318, 319 작제건 作帝建 454 잔수진 潺水津 452 잡공 雜頁 337, 348, 354, 355, 357~360, 362~366, 369, 370, 396 잡구분위전 雜口分位田 225, 231 잡구분전 雜口分田 226,231 잡로직 雜路職 58, 60 잡류전 雜類田 186 잡별사 雜別賜 $4,103\sim105,111,114,$ 125

잡세 雜稅 11, 337, 392, 393, 398 전면반전경 全面反轉耕 325 잡작국 雜作局 419 전미세조 轉米稅租 129, 131 잡직방 雜織房 15, 419, 421 전민계정사 田民計定使 368 잡직서 雜織署 425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整都監 266 잡직체아록 雜職遞兒祿 전부제도 田賦制度 126 238 잡척 雜尺 440 전세 田稅 12, 336, 338, 347, 350, 351 장 莊 142, 143, 145, 159, 172, 175, 176, 전세공물 田稅責物 362 178, 179, 181, 252, 365, 432 전세의 역 田稅의 役 362 전시과 田柴科 장교록 將校祿 $1, 23, 34, 41, 66, 70 \sim$ 4 장병서 長柄鋤 72, 76~80, 84, 88~90, 94~97, 99, 108, 110, 325, 327 112, 132, 163, 208~210, 223, 224, 227~232, 장복서 掌服署 15, 419 장사 莊舍 258 239, 241, 304, 357, 362 장생고 長生庫 전시과 체제 田柴科 體制 470 9, 21, 24, 장생표 長生標 256, 257, 259 84, 91, 135, 225, 232, 238, 278 장시 場市 16, 447, 449, 450, 453 전영보 全英甫 260, 435 장야서 掌治署 전운사 轉運使 424, 427 14, 400 장작감 將作監 전작 佃作 419, 447 148, 197 장전 長田 131, 185, 186, 233 전장 田莊 22, 72, 73, 166, 274, 440 장전 莊田 7,256 전적 田籍 162, 268, 369 장・처 莊・處 188, 351 전정 田丁 4, 5, 77, 92, 360, 367, 369 장・처전 莊・處田 178, 189, 267, 283, 전정분급 田丁分給 79 전정설 田丁說 367 장택공해전 庄宅公廨田 187 전정연립 田丁連立 $79 \sim 81, 89, 90, 92,$ 장택전 庄宅田 142 95, 212, 245, 246 장호 莊戶 177, 383 전정체립 田丁遞立 247 재가화상 在家和尙 전제개혁 田制改革 151, 261 267, 351 재면규정 災免規定 336 전제개혁론 田制改革論 176 재면지제 災免之制 348 전제개혁론자 田制改革論者 138, 139 재역지 再易地 11 전제상정준수화 田制上程遵守畵 저화 楮貨 128 전조 田租 9, 30, 33, 72, 74, 75, 82, 192, 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 寂忍禪師照輪清 207, 212, 266, 279, 339, 348, 350~355, 358, 淨塔碑 301 359, 361, 365, 370 적전 籍田 6, 22, 142, 149, 150, 178, 전주전객제 田主佃客制 274 192, 203, 205, 283 전품 田品 $11, 77, 303, 310 \sim 312, 318,$ 적점법 積苫法 329, 390 350 전객 佃客 23, 80, 85, 87, 88, 164, 210 전호 佃戶 11, 62, 131, 151, 167, 181, 전결제 田結制 1, 297 190, 244, 251, 339, 344 전군 佃軍 87 전호제 佃戶制 $141, 142, 149 \sim 156,$ 전권 田券 21, 135 166~168, 170, 171, 181, 182, 189, 190, 192, 전록 田祿 32 197, 198, 200~340, 342, 343, 347, 351, 353

점찰보 占察寶 300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 淨兜寺五層 石塔造成形止記 308, 309, 439 정도전 鄭道傳 153, 161, 167, 193, 195, 329, 363 정습명 鄭襲明 410 정웅 鄭雄 69 정전 丁田 134, 302 정전법 井田法 291, 294, 295 정호 丁戶 355, 366, 368 정호설 丁戶說 367 《제민요술》《齊民要術》 319.320 제아문공장별사 諸衙門工匠別賜 4, 103, 104, 111, 125 제아문공장별사록 諸衙門工匠別賜祿 68, 105 제위보 濟危寶 470 제지수공업 製紙手工業 436 조 租 9, 335, 357, 363, 365, 366 조 調 9, 348, 357, 360, 361, 363, 364, 370 조가전 朝家田 13, 148, 181, 190, 244, 250, 251 조거 漕渠 409, 410 조공무역 朝貢貿易 16, 456, 462 조군 漕軍 414 조만비 漕輓費 409 조선 漕船 15, 405, 412, 414, 415 《조선부》《朝鮮賦》 314 조세 租稅 1, 11, 14, 30, 31, 33, 174, 232, 278, 280, 284~286, 335, 338, 344, 351, 359, 361, 371, 374, 383, 389, 390, 399, 469 조업구분전 祖業口分田 230 조업전 祖業田 144, 146, 160, 161, 172, 181 조용조 租庸調 272, 336, 354, 355 조운 漕運 1, 14, 85, 88, 149, 212, 335, 373, 396, 399, 402, 403, 405, 408~416, 453 조원정 曺元正 183, 191 조인옥 趙仁沃 175, 177, 178, 267 조장 租藏 14, 400

조전성 漕轉城 414 조종수전수전지법 祖宗授田收田之法 90 조준 趙浚 11, 130, 132, 153, 155, 169, 171, 175, 176, 222, 269, 271, 351, 365 조창 漕倉 $1, 13 \sim 15, 373, 374, 381, 399,$ 403~405, 407~411, 413~416 조포 調布 357 족정 足丁 220, 238, 367 종부시 宗簿寺 179 종실록 宗室祿 4, 5, 105, 106, 111 좌우산기상시 左右散騎常侍 좌우주무 左右酒務 447, 465 좌위 坐位 301.303 좌지 坐地 303 좌창 左倉 27, 128~130, 173, 185, 199, 273, 350, 352, 407, 409 주소 紬所 430, 431 주전관 鑄錢官 465 주전도감 鑄錢都監 465 주전사업 鑄錢事業 465 주전정책 鑄錢政策 466, 468 そろをを付け 州鎭屯田軍 148, 155 주진장상록 州鎭將相祿 주진장상장교록 州鎭將相將校祿 103, 105, 126 주현군 州縣軍 235, 247, 464 주현둔전 州縣屯田 192 중단경 中壇卿 37, 38 중상서 中尚署 419, 424, 427 중앙관록 中央官祿 128 중앙관청수공업 中央官廳手工業 지대 地代 134, 169, 278, 284, 285, 471 지리엄・승인별사 地理業・僧人別賜 68,69 지방공해전 地方公廨田 184,187 지방관청수공업 地方官廳手工業 419, 421 지세 地稅 152, 169, 284, 364, 471 지소 紙所 15, 430, 431 지역적 균전제 地域的 均田制 291

지위전 紙位田 183, 185 지장 知莊 166, 257, 436 지장사 地藏寺 147, 160 지전 紙田 131, 185, 233, 422 지종법 漬種法 329 지주전호제 地主佃戶制 274 지증 智證 22, 160, 161 지척 指尺 10, 310, 311, 313, 314 직분전 職分田 97 직역 職役 23, 79, 81, 89, 90, 96, 126, 132, 225, 232, 239, 279, 290, 367, 368 직염국 織染局 420 직영제 直營制 147, 149, 170, 181, 182, 189, 191, 197, 198, 200, 204, 205, 342, 343 직전 職田 93, 96, 134, 186, 214, 225, 232, 235, 239 직조수공업 織造手工業 436,437 진봉무역 進奉貿易 17,460 진성창 鎭城倉 413, 414 진세 津稅 466 진여원 眞如院 301 진전 陳田 36, 146, 152, 153 진전사원 眞殿寺院 진주(진산) 珍州(珍山) 29 진헌하사무역 進獻下賜貿易 462 집경전 執耕田 164 집권적 공전제 集權的 公田制 9, 134, 278 집권적 토지국유 集權的 土地國有 9

[ㅊ]

차대 借貸 469, 471 차대법 借貸法 2, 469 차역 差役 376~378 창고전 倉庫田 335, 336 창부 倉部 187 처 處 142, 143, 145, 159, 172, 175, 176, 178, 179, 181, 252, 365, 432 처간 處干 151, 337, 340, 377

처전 處田 7, 256 천경 淺耕 322 천달 千達 157, 308 천룡사 天龍寺 147, 160 천태종 天台宗 466 천화 泉貨 448 철부 鐵斧 326 철세 徹稅 340 철소 鐵所 15, 430, 438 철전 鐵錢 17, 446, 464 첨사부 詹事府 183 청도군 淸道郡 65 청요직 淸要職 61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313, 314 청주록 靑州祿 28, 30, 32 체아직 遞兒職 116 초공 梢工 405, 408, 414 초마선 哨馬船 15, 407 초번록 初番祿 128 촌시 村市 448 최승로 崔承老 44, 102, 187, 470 최이 崔怡 $27.271 \sim 273.332.361$ 최제안 崔齊顔 147, 160 최지몽 崔知夢 270 최충 崔冲 126 최충헌 崔忠獻 137, 139, 180 최치원 崔致遠 287, 288 최항 崔沆 101, 273 최해 崔瀣 259, 463 추경 秋耕 322 추밀원 樞密院 109 축전주 상객 筑前州商客 충선왕 忠宣王 26, 172 취선사 驚仙寺 301 치사관록(제) 致仕官祿(制) 4,5,105, 126 치사록 致仕祿 100, 104, 132 치사직 致仕職 47 칠십치사반록법 七十致仕半祿法

127

[≡]

탁금성 濯錦成 429 탄소 炭所 15, 430 태복감 太卜監 49 태복시 太僕寺 421 태악관현국 太樂管絃局 421 태재부 太宰府 $460 \sim 462$ 토지공유제 土地公有制 133, 277 토지국유(론) 土地國有(論) 8, 137, 276, 287 토지국유설 土地國有說 285 토지국유제(론) 土地國有制(論) 1.8. 9, $133 \sim 135$, $276 \sim 279$, 282, 283, 287, 289, 296 토지매매 土地賣買 281 토지분급(제) 土地分給(制) 23,24,34, 35, 42~44, 62, 88, 96, 178, 231 토지사유론 土地私有論 토지사유의 결여 土地私有의 缺如 287 토지사유제(론) 土地私有制(論) 22. 24, 30, 80, 81, 133~135, 138, 158 토지소유(관계) 土地所有(關係) 253, 278, 286 토지소유의 이중구조론 土地所有의 二重 構造論 287 토지의 중층적 소유론 土地의 重層的 所有論 287 토지제도 土地制度 133, 221, 231, 236, 264 통도사 通度寺 259 통양창 通陽倉 406 투화전 投化田 144, 222, 226, 274, 275

[亚]

팔관회 八關會 381, 382, 455 팔량진 八良津 452 패강진 浿江鎭 193

편호 編戶 389, 433 평농서사 評農書史 329 평량 平亮 158, 167 평전 平田 300, 318, 329, 389 평포절납제 平布折納制 362 평휴경 平畦耕 322 포 浦 $400 \sim 402$ 포세 布稅 360, 370 포의 선임 浦의 船賃 포의 신구명칭 浦의 新舊名稱 400 포의 위치 浦의 位置 403 포폐 布幣 446 포화 布貨 464 품관 品官 74, 114, 386 품종 品從 386 풍수지리설 風水地理說 69 풍저창 豊儲倉 129, 173, 352, 409 피마규정 避馬規程 51

[ㅎ]

하륜 河崙 168, 340 하세 夏稅 336, 364 하양창 河陽倉 412, 414 하원대 下院代 301, 303 하음부곡 河陰部曲 148, 197, 198 학보 學寶 203, 470 학전 學田 6, 22, 142, 150, 192, 203~ 205, 283 한산군 閑散軍 146, 159, 166 한외과 限外科 39, 48, 53, 54, 58, 59 한인 閑人 $2,34,222\sim225$ 한인구분전 閑人口分田 83,84,225, 226 한인전 閑人田 6,8,70,144,222~226, 275 한인전시과 閑人田柴科 한전 閑田 $263,345 \sim 347$ 한전농법 旱田農法 320,329 한전제 限田制 169, 336, 341

한황지초목어렵권 閑荒地樵牧魚獵權 95 해동중보 海東重寶 466 해동통보 海東通寶 17, 465, 466 해세 海稅 14, 392, 397, 398 해인사 海印寺 253 행두겸직제 行頭兼職制 108, 110 행상 行商 16,451,452 행수시청수법 行守試請受法 113 향 鄕 159, 176, 184, 412, 429, 432 향리외역전 鄕吏外役田 $231 \sim 233$, 237, 239 향리전 鄕吏田 7, 23, 70, 154, 157, 163, 231, 237, 239 향역 鄕役 7,237,238,243 향의귀순성주 鄕義歸順城主 218, 236 향직 鄕職 44, 49, 59, 64, 66~68, 234, 235, 237, 239 향직전 鄕職田 66 향직토지지급 鄕職土地支給 59 허시 墟市 448 현물세 現物稅 355, 359, 363 현화사 玄化寺 144, 147, 196, 254, 258, 262 현화사비음기 玄化寺碑陰記 69 호구계점방식 戶口計點方式 368

호급둔전 戶給屯田 201 호등제 戶等制 388, 390 호세 戶稅 364 호시(장) 互市(場) 16, 443, 450, 456 호장 戶長 $186,234 \sim 236,239$ 호장직전 戶長職田 호포제 戶布制 366 화폐경제 貨幣經濟 464 화폐유통(정책) 貨幣流通(政策) 447, $449,464 \sim 468$ 화폐주조 貸幣鑄造 465 활구 闊口 467 황보유의 皇甫兪義 81, 207 횡간 橫看 371 훈전 勳田 218, 236 휴립경 畦立耕 322 휴한법(설) 休閑法(說) 11, 77, 78, 318~ 320 휼양구분전 恤養口分田 8,226~229 휼양전 恤養田 96, 229 흥국사 興國寺 444 흥달 興達 28~32 흥왕사 興王寺 137, 178, 250, 254, 255, 379, 407, 439

집 필 자

개	요 박용원	È
	I. 전시과 체제	
1. 전	시과 제도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김재	명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김재	명
3) -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김재	명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김재	명
5)	별정전시과 김재	명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김재	명
7)	녹봉제 최정.	환
2. 공	전ㆍ사전과 민전정재	정
3. 공	전의 여러 유형	일
4. 사	전의 여러 유형	
1)	양반과전김재	명
2)	공음전이병	히
3)	한인전이병	회
4)	구분전이병.	ठे
	향리전박경.	
6)	군인전박경.	자

7) 궁원전 박경자
8) 사원전이병희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이병회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박용운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박용운
3) 전결제이우태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위은숙
Ⅱ. 세역제도와 조운
1. 조 세김재명
2. 공 부이혜옥
3. 요 역이정희
4. 잡 세이정희
5. 조운과 조창최완기
ㅠ 스코시크 기시
Ⅲ. 수공업과 상업
1. 수공업서명희
2. 상업과 화폐김동철

한 국 사

14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1993년 12월 10일 1995년 12월 28일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위 원 장 박 영 석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